



챗GPT의 불법세무대리와 조세법원 설립에 대한 실무적 검토

일시 : 2023. 4. 27.(목) 15:00

장소 : 한국세무사회 2층 대회의실

■ 인공지능(AI)의 불법세무대리에 대한 고찰 – 챗GPT 등

좌장 : 서보국 교수(충남대)

발제 : 이한우 세무사

토론 : 정진오 세무사, 한정미 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 조세법원의 설립 필요성과 향후 과제

좌장 : 이동식 교수(경북대)

발제 : 차현숙 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토론 : 박정흠 박사 · 홍병진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진행 일정

시 간	내 용
14:30-15:00	등록 및 안내
15:00-15:05	(개 회 사)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15:05-15:35	제 1 주 제 인공지능(AI)의 불법세무대리에 대한 고찰 - 챗GPT 등 좌 장 서보국 교수 (충남대) 발 표 이한우 세무사
15:35-16:05	지 정 토 론 정진오 세무사 한정미 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자 유 토 론
16:05-16:20	Coffee Break
16:20-16:50	제 2 주 제 조세법원의 설립 필요성과 향후 과제 좌 장 이동식 교수 (경북대) 발 표 차현숙 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16:50-17:20	지 정 토 론 박정흠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병진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 유 토 론
17:25-	(폐 회)

목 차

◎ 주 제 : 챗GPT의 불법세무대리와 조세법원설립에 대한 실무적 검토

■ 제1주제

인공지능(AI)의 불법세무대리에 대한 고찰 - 챗GPT 등 7
이한우 세무사

토론문 정진오 세무사 61

토론문 한정미 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65

■ 제2주제

조세법원의 설립 필요성과 향후 과제 71
차현숙 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토론문 박정흠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100

토론문 홍병진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102

제 1 주 제

인공지능(AI)의 불법세무대리에 대한 고찰
챗GPT 등

| 주제 발표자 | 이 한 우 세무사

제 1 주 제

인공지능(AI)의 불법세무대리에 대한 고찰 챗GPT 등

| 이한우 세무사 |

I. 서론

미래학자 앨빈토플러는 그의 대표적 저서 “제3의 물결”에서 제1의 물결인 농업혁명은 수 천년, 제2의 물결로서 산업혁명은 300년이 걸렸지만 제3의 물결에 해당하는 정보화 혁명은 30 년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의 예언은 적중하였는데, 컴퓨터 및 스마트 폰과 인공지능은 21세기 지구촌을 무서운 속도로 바꿔 놓았다. 인공지능의 습격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세무대리 업계에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다. 하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인공지능 플랫폼으로서 삼짍삼과 자비스 세무대행에 대한 불법 세무대리의 고발에 대해 수사기관이 불송치한 결정이고 다른 하나는 챗GPT 출현으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국세청이 “전문가 도움이 필요 없는 누구나 쉽고 편리한 홈택스로 개편 추진”을 발표하면서 마치 미래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모든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세의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국세청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발표한 것이다.

불법 세무대리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기존의 사무장 등 사람 중심의 소규모에서 기계학습과 챗GPT를 활용한 인공지능 플랫폼의 대규모·대량으로 전환 되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인공지능의 불법 세무대리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인공지능과 세무대리의 기본 개념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Ⅱ. 인공지능과 세무대리의 기본 개념

1. 인공지능

오늘날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립되고 통용되는 정의는 없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인간의 구체적 지시나 통제가 없더라도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작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컴퓨터 프로그램 형태로 체화된 소프트웨어와 그 특정 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하드웨어가 총체적으로 결합된 시스템”이라는 견해¹⁾가 있고 “복잡한 환경 아래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환경을 인식하고,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얻어진 정보와 학습된 지식에 기반을 둔 탐색으로 주어진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행동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실행하는, 인간에 의해 고안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시스템”이라는 견해²⁾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각 능력 및 학습·추론 능력과 자연언어의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로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의 분류를 <표 1>과 같이 하고 있다.³⁾

〈표 1〉 인공지능 기술의 분류

기술	내용
인지컴퓨팅 (Cognitive computing)	인지시스템은 데이터들로부터 그 자신의 추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서 컴퓨터가 인간과 같이 정보를 습득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기계학습은 확률적 모델을 토대로 비슷한 데이터를 통해 예측하는 과정으로서 프로그램화된 논리(로직)나 정형화된 규칙 등을 바탕으로 발생 되는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는 수리/수학적 알고리즘을 의미한다.

- 1) 이해원, “인공지능과 법인격 - 불법행위책임의 관점에서 -”, 『법조』 제70권 제4호, 법조협회, 2021, 214~215면.
- 2) 강현구, “인공지능의 법적정의와 인공지능기술 발달에 따른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헌법재판연구』 제8권 제2호, 헌법재판연구원, 2021, 43면.
- 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2019-2021 인공지능』, 2019, 2면.

기술	내용
심층학습 (Deep learning)	심층학습은 기계학습과 유사하지만 인간 신경망을 모델화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하는 기술로서 특정 이미지나 음향 및 동영상 데이터 등의 패턴을 분석할 수 있도록 많은 학습을 통해 스스로 무엇인가를 인지하는 기술을 말한다.
자연어 처리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 처리는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여 인간처럼 말하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서 인간의 다양한 언어에 대해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것 역시 자연어 처리로 볼 수 있다.
데이터마이닝 (Data mining)	데이터마이닝은 많은 데이터에 속에서 유용한 상관관계를 발견하는 것으로서 미래에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하고 의사 결정에 이용하는 과정을 말한다.
음성인식 (Speech recognition)	음성인식은 인간이 발성하는 음성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자(코드) 정보로 변환하는 기술을 말한다.
패턴인식 (Pattern recognition)	패턴인식은 기계에 의하여 도형·문자·음성 등을 식별하는 것으로서 현재 제한된 분야에서 실용화되고 있으므로 본격적인 패턴인식은 아직 연구단계이다.
컴퓨터비전 (Computer vision)	컴퓨터비전은 로봇의 눈을 만드는 연구 분야로서 컴퓨터가 실세계 정보를 취득하는 모든 과정을 다룬다.
이미지 인식 (Image recognition)	이미지 인식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특정 피사체 및 사진의 정체를 확인하고자 시도하는 기술로서 사람이 볼 수 없거나 지진계와 같은 파형 등도 이미지 패턴인식에 포함될 수 있다.
지능엔진 (Intelligent Agent)	지능엔진은 인공지능적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 엔진으로서 사용자를 보조하고 인간의 반복된 업무를 컴퓨터가 대신하여 실시하는 엔진을 말한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가지는 지능적인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계 등으로 구현한 기술로서 기계학습, 심층 학습,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등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컴퓨터가 사람의 판단 능력을 학습하는 핵심 기술들이다. 기계학습은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하여 패턴을 파악하는 기술로서 이를 통해 인공지능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판단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심층학습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학습 방법으로서 기계학습보다 더 복잡하고 추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다. 자연어 처리는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기술로서 음성인식 및 기계번역 또는 자동요약 등에 사용된다. 컴퓨터 비전은 컴퓨터가 이미지나 비디오를 처리하여 대상을 인식하고 추적하는 기술로서 자율주행자동차 및 로봇 등에 사용된다. 인공지능은 현재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 세무대리

대리는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은 자(대리인)가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을 위한 법률 행위를 하여 그 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의 요건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법률행위⁴⁾(①)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본인을 위해 한다는 현명⁵⁾(②) 및 대리권의 존재(③) 세 가지이다. 이를 예시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⁶⁾

- ① 乙과 丙이 계약체결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법률행위의 존재)
- ② ①은 乙이 甲을 위해 하는 것임을 표시한 사실(현명)
- ③ ①의 계약 효과가 甲에게 직접 귀속하게 하는 甲과 乙 간의 법률관계(대리권의 존재)

세무대리의 법적 성격은“납세자로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과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를 위임받은 세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대법원의 판결⁷⁾에 따라 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다. 위임인으로서 의뢰인은 전문가인 수임인에게 특별한 대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사무의 처리를 맡긴 것으로서 세무대리는 위임의 범주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위임의 대상인 세무대리의 범위는 자격사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⁸⁾

세무사법 제2조에서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표 2>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고 있는데, 이를 “세무대리”라 한다.

4) 위키백과, “법률행위”, <https://ko.wikipedia.org/wiki/>(검색일 : 2023.03.07.).

5) 박찬주, “顯名主義”, 『외법논집』 제31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551면.

6) 박태신, “요건사실에 관한 고찰 - 유권대리와 광의의 무권대리를 중심으로 -”, 『홍익법학』 제17권 제3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304면.

7) 대법원 2005.01.14. 선고 2003다63698 판결.

8) 최광선, “변호사의 세무대리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37권 제3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97~98면.

〈표 2〉 세무대리의 범위

구분	내용
① 조세의 신고 등 대리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② 세무조정계산서 등의 작성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③ 기장 대행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④ 조세 상담·자문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⑤ 세무조사 등 대리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⑥ 개별공시지가 등 대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 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⑦ 신고서류의 확인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⑧ 성실신고 확인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⑨ 기타	①부터 ⑧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순수한 의미로서 세무대리는 대리의 법률적 의미로 볼 때 과세권자에 대하여 법이 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는 <표 2>의 세무대리 중 ①조세의 신고 등 대리·⑤세무조사 등 대리·⑥개별공시지가 등 대리라 할 수 있다.⁹⁾ 그러나 세무 대리인은 납세자를 대신하여 조세의 신고 등에 대한 법률행위를 행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과세권자와 사실확인 및 세법해석 등에 대해 상호 절충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의 하나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세무대리는 법률행위의 대리에 그치지 않고 사실행위로서 조세의 상담 및 대행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¹⁰⁾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세무대리는 위임인인 의뢰인으로부터 조세의 신고 등을 위임받은 자(세무 대리인)가 위임인의 이름으로 위임인을 위한 법률행위(조세의 신고 등)를 하여 그 효과

9) 안경봉, “2004년 이후 세무사 자동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에 대한 입법개선방안”, 『세무와 회계연구』 제8권 제3호,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소, 2019, 28~29면.

10) 김병일, “세무대리인의 책임과 리스크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8권 제4호, 한국세무학회, 2011, 216면.

(납세의무 확정)를 직접 위임인에게 귀속시키는 행위와 사실행위로서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및 조세 상담 등을 의미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대리권의 존재로서 세무 대리인의 적법 여부이다. 세무 대리인은 세무사로서“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한 자와 공인회계사로서“공인회계사 세무대리 업무 등록부”에 등록한 자 또는 변호사로서“변호사 세무대리 업무 등록부”에 등록한 자만이 할 수 있다.¹¹⁾ 이렇게 세무 대리인을 세무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한 이유는 건전한 세무 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세무대리 행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¹²⁾

3. 인공지능과 세무대리

인공지능의 기계학습 및 자연어 처리 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으로 인간이 수행하던 기장 대행 및 조세의 신고 등 세무대리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인공지능의 기계학습 기술을 접목한 인공지능 세무대리 프로그램은 세무 자동화 플랫폼 제공을 목표로 기존과 같이 세무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플랫폼¹³⁾을 소비자가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판매하는 형태이다. 즉,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데이터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¹⁴⁾에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를 인공지능 세무대리 프로그램이 인식한 후 고정된 설정값에 의하여 이를 차변과 대변으로 자동으로 분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자동 분개를

11) 세무사법 제20조.

12) 대법원 2020.05.28. 선고 2015도8490 판결.

13) 플랫폼(platform)은 온라인에서 생산·소비·유통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인공지능 세무대리란 바로 인공지능 세무대리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세무대리 서비스를 의미한다. 결국 “인공지능 세무대리 = 인공지능 세무대리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14)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어로서 애플리케이션과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API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다른 애플리케이션 또는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코드의 집합이다. 이러한 API는 보통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기능, 데이터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 홈택스 API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 서비스와 연동하여 개발자나 기업이 자동화된 세무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이다. 홈택스 API를 활용하면 개발자나 기업은 세금 신고, 과세정보 조회, 현금영수증 발급 등과 같은 세무 업무를 자동화하여 처리할 수 있다. 홈택스 API를 사용하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API를 신청하고 인증받아야 한다. 따라서 개발자나 기업이 홈택스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과의 제휴 신청 및 인증을 거쳐야 한다(챗GPT, “국세청 API는 무엇인가?”, <https://chat.openai.com/chat>(검색일 : 2023.03.27.)).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세무대리 프로그램에 특정 거래처명을 특정한 코드로 변경하여 입력한 뒤 관련 데이터를 처리하는 1차 학습 과정이 필요한데, 고객들이 기존에 다른 세무사와 거래한 자료를 분석하여 1차 학습을 시킴으로써 이후의 자동 분개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인공지능 세무대리 프로그램은 고객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업무 처리와 관련된 고객들의 각종 정보(홈택스 정보 및 기타 금융정보 등, 다만 각종 영수증은 추가로 인공지능에 인식시켜주어야 함)에 대한 접근 및 이용 권한을 얻어 고객들의 업무를 처리한다. 인공지능 세무대리 프로그램은 상대 거래처명을 학습해야 하는 1차 학습을 전제로 하므로 인공지능의 기계학습 기술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장차 인식범위를 넓히는 개선을 통하여 인공지능 세무대리 프로그램은 1차 학습이 필요 없는 심층학습 기술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된다.¹⁵⁾

세무대리의 범위에는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도 포함되어 있는데,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공지능이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의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¹⁶⁾ 그러나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조세 상담·자문도 챗GPT¹⁷⁾의 출현으로 가능하게 되었다.¹⁸⁾

챗GPT는 세계 최대의 AI 연구소인 오픈AI(OpenAI)가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AI) 모델 GPT-3.5를 기반으로 제작한 대화형 Chatbot(이하, 챗봇)¹⁹⁾ 서비스이다. 챗GPT는 기존의 챗봇과

15) 조상규, “인공지능 세무대리 프로그램의 법적책임”, 『중앙법학』 제19집 제3호, 중앙법학회, 2017, 78~79면.

16) 조상규, 위의 논문, 79면.

17) 챗GPT에서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로서 우리말로 “미리 훈련된 생성 변환기”라 할 수 있다. 챗GPT는 기존에 입력된 스크립트로만 대화를 진행하는 연산형 변환기에서 진일보해 답러닝을 통해 스스로 언어를 생성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갖췄다(문형남, “챗GPT 교육에 활용하려면 단점과 문제점 이해해야”, <https://news.unn.net/news/>(검색일 : 2023.04.04.).

18) 자비스앤빌런지는 챗GPT 기반 세금 챗봇 “AI 점삼이” 베타 버전을 공개하였다. AI 점삼이는 삼점삼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관련 질문에 즉시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단편적인 답변 뿐 아니라 출처 콘텐츠를 함께 제공해 이용자가 정보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삼점삼은 베타 버전에 이용자의 의견을 수용해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연말정산을 포함한 다양한 세금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개발할 예정이다(김경은, “삼점삼, 챗GPT 기반 ‘세금 AI 챗봇’ 선포... ‘국내 최초’”, <https://m.oheadline.com/articles/>(검색일 : 2023.03.27.).

19) 챗봇은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로서 로봇의 인공지능을 대화형 인터페이스에 접목한 기술이다. 이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대화형 시스템을 지칭한다(김성근 외 2인, “챗봇 기술 소개 및 사례 분석”, 『정보와 통신 열린강좌』 제35권 제2호, 한국통신학회, 2018, 21면). 봇과 채팅을 합한 챗봇(Chatbot)은 인간의 자연어를 사용하여 컴퓨터 데이터 베이스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소프트웨어로서 검색 엔진과 유사하지만 검색 엔진이 갖지 않는 별개의 기능이다. 즉, 사용자에게 답변이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대화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챗봇은 인공지능으로서 자연어처리 기능과 검색 기능을 중심으로 구현된다(양종모, “인공지능 챗봇 알고리즘에 대한 몇 가지 법

다르게 표면적인 정보 뒤에 숨어 있는 맥락을 이해하고 과거의 대화 기록을 기억함으로써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닌 사람과 나누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대화를 진행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문서 생성(기사, 시, 소설, 이메일 등), 질문에 답변, 대화형 AI (인간과 같은 대화에 참여하여 상황에 맞게 적절하고 일관된 텍스트를 생성), 번역, 텍스트 요약, 코드 생성 등이 있다. 챗GPT는 출시된 지 2달 동안 미국 와튼스쿨 MBA, 미국 의사면허시험(USMLE), 로스쿨 시험 등 모두 무난하게 통과함으로써 인간의 지적 능력과 관련된 대부분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하였다.²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세무대리 플랫폼은 다양한 조세 정보의 제공·검색 서비스, 세무사와 납세자의 알선·중개 서비스, 세무사 수입료 비교 견적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데이터 API를 활용한 장부 작성 및 신고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²¹⁾ 이러한 인공지능 세무대리 플랫폼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인공지능 세무대리 플랫폼 현황(2021.10.기준)

서비스	업체	플랫폼 서비스 내용	제휴 세무사	이용료
자동장부 프로그램	A	인공지능 경리 회계 관리, 제휴 세무사 세무대행 업무	세무사 회계사	1,000원~환급액 기준 약 10% 수준 인공지능 경리(월 33,000원) 세무대행 패키지(월 80,000원)
	B	세금자료 자동수집, 자동장부 작성, 매출·매입 관리	회계사	(정부비대면사업지원금 적용시) 개인은 1백만원(년), 법인은 2백만원(년)
	C	세무신고에 필요한 자료 : 홈택스 자동수집·신고 앱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1회당 33,000원
	D	매입·매출 관리 자동장부 프로그램, 예상 세액 계산 등	-	-
	E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자가 신고, 부가가치세 환급지원	제휴 세무사	-

적 고찰”, 『홍익법학』 제21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453면).

20) 챗GPT는 지난 2022년 11월에 출시됨과 동시에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출시 5일 만에 100만 명, 1개월 만에 약 1,000만 명의 사용자를 모은 이후 2개월 만에 월간활성사용자수(Monthly Active Users, MAU) 1억 명을 돌파하였다. 타 IT 업체가 사용자 1억 명을 달성까지 걸린 시간은 TikTok(9개월), Instagram(30개월), Pinterest(41개월), Spotify(55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챗GPT는 매우 빠른 속도로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삼일PwC경영연구원, 『Chat GPT, 기회인가 위협인가 Chat GPT 이해와 영향 분석』, 2023, 2면).

21) 김성태, “세무대리 플랫폼 비즈니스에 관한 소고”, 『인문사회 21』 제13권 제5호, 인문사회 21, 2022, 2332면.

서비스	업체	플랫폼 서비스 내용	제휴 세무사	이용료
	F	자동장부 프로그램,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지원	제휴 세무사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기장대리 41,000(월)
	G	자동장부 프로그램, 전문 세무사 장부 정리, 세무신고 대행 홍보	제휴 세무사	개인 : 월 12,900원 법인 : 월 49,900원
	H	전자증빙 자동수집, 자동장부 프로그램	회계법인	기장 대행 월 6만원
	I	스마트 기장, 간편장부 자동장부 프로그램	-	월 7만원(기장) (조정료 별도)

※ 출처 : 김성태, “세무대리 플랫폼 비즈니스에 관한 소고”, 『인문사회 21』 제13권 제5호, 인문사회 21, 2022, 2332면.

<표 3>의 인공지능 세무대리 플랫폼은 자동장부 작성 및 소득세 등 환급 대행을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서 이는 인공지능이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를 함으로써 세무사법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인공지능이 불법 세무대리를 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단락을 바꾸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인공지능의 불법 세무대리

1. 문제의 소재

기존에는 불법 세무 대리의 주체가 세무사 사무실에 고용되었거나 반대로 세무사를 고용한 사무장으로서 그 사무장이 세무사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많은 사업자에게 조세의 신고 등 세무 대리를 하고 그 사업자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수취함으로써 세무사 자격이 없는 일명 사무장에 의한 불법 세무 대리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다.²²⁾ 이외에도 세무사 아닌 자가 세무사의 지휘 감독을 받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자신의 업무로 기장을 대행하고 그 장부를 토대로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까지 마친 후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조정계산서만을 가지고 가서 그의 기명날인을 받는 형태로 불법 세무대리 행위가 이루어졌다. 이는 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의 형식적인 점을 검토한 후 기명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무사의 자격이

2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선고 2017고단5681 등 판결.

없는 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의 명의만을 빌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세무대리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²³⁾ 또한,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사단법인 사무실 컴퓨터에 회계사가 개발한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 사단법인의 직원들은 위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사단법인 소속 회원 약 1,000명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세무사로부터 대여받은 명의와 아이디 및 공인증서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변환·전송함으로써 약 1,000여 명에 이르는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본인을 대신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불법 세무 대리를 하였다.²⁴⁾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기존의 불법 세무대리 유형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기존의 불법 세무대리 유형

유형	내용
사무장에 의한 불법 세무대리	가장 일반화된 불법 세무대리 형태로서 형식은 세무사가 사무장을 고용한 것이지만 실질은 세무사는 명의만 대여하고 거래처 확보 및 조세의 신고 등 세무 대리의 실질적인 업무는 사무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태의 불법 세무 대리이다.
세무사 명의대여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장부 작성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한 후 그 신고서 등에 세무사가 형식적으로 기명날인하는 형태의 불법 세무 대리이다.
세무회계 프로그램으로 신고서 등을 작성한 후 세무사 명의로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	음식점 협회 등 직능단체의 협회 등이 세무회계 프로그램으로 협회의 직원들이 그 협회 소속 회원사들의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사 명의 및 아이디와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신고하는 형태의 불법 세무 대리이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불법 세무 대리의 주요 주체는 인간(사람)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인공지능의 습격이라 할 만큼 플랫폼이라는 형태의 다양한 인공지능 세무대리 프로그램이 출현함으로써 불법 세무 대리의 주체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사람)에서 인공지능 세무대리 프로그램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실이다.²⁵⁾ 이러한 인공지능의 불법 세무 대리는 두 가지

23) 대법원 1996.09.24. 선고 96도1278 판결.

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3. 선고 2013고정2282 판결 ; 대법원 2020.05.28. 선고 2015도8490 판결.

25) 김성태, 앞의 논문, 2337면.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플랫폼 형태로서 기계학습을 통한 인공지능의 세무대리 프로그램이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조세의 신고 등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챗GPT를 활용한 인공지능이 직접 조세 상담을 하고 조세 불복에 대한 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작성을 토대로 조세 불복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플랫폼 형태로 제공되는 인공지능의 불법 세무 대리가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고 그에 대한 불법성과 책임을 고찰하기 위한 사례로서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인 자비스앤빌런즈가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 “삼점삼”과 “자비스 세무대행”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가까운 장래에 챗GPT를 활용한 인공지능의 불법적인 조세 상담 및 조세 불복 대리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사례를 고찰할 필요성도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이하에서는 플랫폼 형태로서 기계학습을 통한 인공지능의 불법적인 세무 대리 사례로 삼점삼과 자비스 세무대행을 검토하고 챗GPT를 활용한 인공지능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인공지능의 불법적인 조세 상담 등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기계학습을 통한 인공지능의 불법 세무대리 : 세무사회와 자비스앤빌런즈의 분쟁

가. 세무사회의 고발과 수사 진행

자비스앤빌런즈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삼점삼과 자비스 세무대행이다.

삼점삼은 자비스앤빌런즈가 개발한 인공지능 세무대리 프로그램으로서 삼점삼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 및 환급을 돕는 서비스로 시작되었다. 2020년 5월에 출시된 삼점삼은 출시 후 2년여 만에 누적 가입자가 1,250만 명 이상에 달하는 앱으로 성장함으로써 자비스앤빌런즈의 기업가치는 1년 만에 기업가치가 10배 상승하였다.²⁶⁾

자비스 세무대행은 인공지능 경리로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법인으로부터 매월 수수료를 수취하면서 그 법인에게 제공되는 업무의 범위는 복식 장부 기장, 부가가치세 계산 및 신고, 근로소득 원천세 및 퇴직금 계산과 신고, 근로자 4대 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 각종 세무 상담으로 명시하여 자비스 홈페이지(<https://jobis.co/>)에 게시하고 있다.

26) 한국조세정책학회,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세무대리 행위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2023, 19~20면.

조세의 신고에 해당하는 세금 신고 및 환급에 대한 업무와 장부 작성은 세무 대리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이외에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세무대리 프로그램으로서 삼점삼과 자비스 세무대행이 불법적으로 세무 대리를 한 것이다. 이에 세무사회와 세무사 고시회는 2021년 3월 삼점삼 및 자비스 세무대행의 불법 세무 대리를 이유로 자비스엔빌런즈의 대표 甲(이하 “자비스엔빌런즈”라 한다)을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이하 “수기기관”이라 한다)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2022년 8월 16일에 불송치 결정²⁷⁾을 하였고 세무사회는 2022년 9월 8일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 세무사법 위반은 자비스엔빌런즈의 무자격 세무 대리과 삼점삼에서 세금 환급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수임이 가능하도록 세무사가 명의대여를 한 사항이다.²⁸⁾

〈그림 1〉 자비스 세무대행 소개서

Jobis

자비스 세무대행 소개서



세무대행 업무범위

기본 수행 업무

※ 월 이용료에 포함된 업무 범위

- ❑ 복식장부 기장
- ❑ 부가세(부가가치세) 계산 및 신고
- ❑ 근로소득 원천세, 퇴직금 계산 및 신고
- ❑ 근로자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 ❑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
- ❑ 각종 세무 상담

별도 과금 업무

※ 월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

- ❑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결산 및 세무조정 포함)
 - ▶ 연 1회, 귀속년도 매출액 및 신고유형 기준으로 세무조정료 별도 과금
 - ▶ 소득세 신고기간 외에 월/분기결산 등 가결산 요청시 별도 과금

<고객사 대행 요청시, 별도 과금>

- ❑ 법인사업자 대표의 종합소득세 신고
- ❑ 원천세 및 부가세 수정/기한후 신고
-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
- ❑ 증권거래세 신고

※ 출처 : 자비스 홈페이지(<https://jobis.co/>)

27)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이기수, “수사상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절차적 통제방안 검토”, 『형사정책』 제33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21, 71면).

28) 이하에서 논의되는 사실관계 및 수사 결과는 세무사회로부터 제공받은 강남경찰서의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나. 자비스앤빌런즈의 불법 세무 대리에 대한 검토

(1) 삼점삼

수사기관은 삼점삼 서비스를 “셀프 환급신청 서비스”와 “환급신청 대행 서비스” 두 가지로 구분하여 판단하였다. 셀프 환급신청 서비스는 고객이 주도적으로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하는 것을 도울 뿐이므로 세무 대리가 아니라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납세자가 환급 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경우로서 플랫폼 역할이 자료수집 및 단순 세액계산에 한정되어 있다면 무자격 세무대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환급신청 대행 서비스는 셀프 환급신청 서비스로 환급신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 파트너 세무사를 연결해 준 것으로서 그 파트너 세무사들이 세무 상담 및 조세신고 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비스앤빌런즈가 직접 세무대리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²⁹⁾

수사기관은 셀프 환급신청 서비스를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자기 신고로 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직접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삼점삼의 단순한 세액계산은 세무 대리로 볼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세무 대리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오류로서 삼점삼이 제공한 서비스에서 셀프 환급신청 서비스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삼점삼 서비스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금환급 서비스는 종합소득세의 신고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의 신고라는 세무대리에 해당하고 개인사업자가 삼점삼 서비스를 이용하여 셀프 환급 신청을 하였다면 수임동의라든지 수임 세무사가 설정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삼점삼 서비스를 이용하여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삼점삼에 가입한 후 수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임동의는 통상적으로 개인사업자와 세무대리인 간의 세무대리 계약으로서 이는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세무대리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것이고 세무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조세의 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납세의무의 확정을 본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대리를 한 것이다. 즉, 세무대리의 기본 성격인 위임과 대리의 첫 번째 단계로서 개인사업자의 수임동의 절차는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개인사업자가 삼점삼을 이용하여 세금환급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절차가 바로 수임동의 절차로서 이는 본인의 세금 환급을

29) 환급신청 대행 서비스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소개.알선으로 두 곳의 파트너 세무사에서 직접 수행하였는데, 이는 세무사법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에 위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사기관은 자비스앤빌런즈가 두 곳의 파트너 세무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알선대가가 아니라 서비스 운영 수수료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으로서 이하에서는 주로 셀프신청 환급 서비스의 불법 세무대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① 삼점삼은 파트너 세무사 2곳으로부터 국세청 홈택스 ID/비번을 제공받음
- ② 개인사업자는 삼점삼에 가입
- ③ 삼점삼은 파트너 세무사 2곳으로부터 제공받은 국세청 홈택스 ID/비번으로 납세자에게 수임동의 신청
- ④ 개인사업자가 삼점삼에게 수임동의
- ⑤ 개인사업자의 환급금 조회 : ③ 및 ④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수임동의를 받은 삼점삼은 납세자의 국세청 홈택스 과세자료(지급명세서 등)를 활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 환급금액(최종 세액>원천징수 세액인 경우)을 개인사업자에게 보여준 후 삼점삼에 환급 신청하도록 유도
- ⑥ 개인사업자는 환급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를 결제함
- ⑦ 부양가족을 입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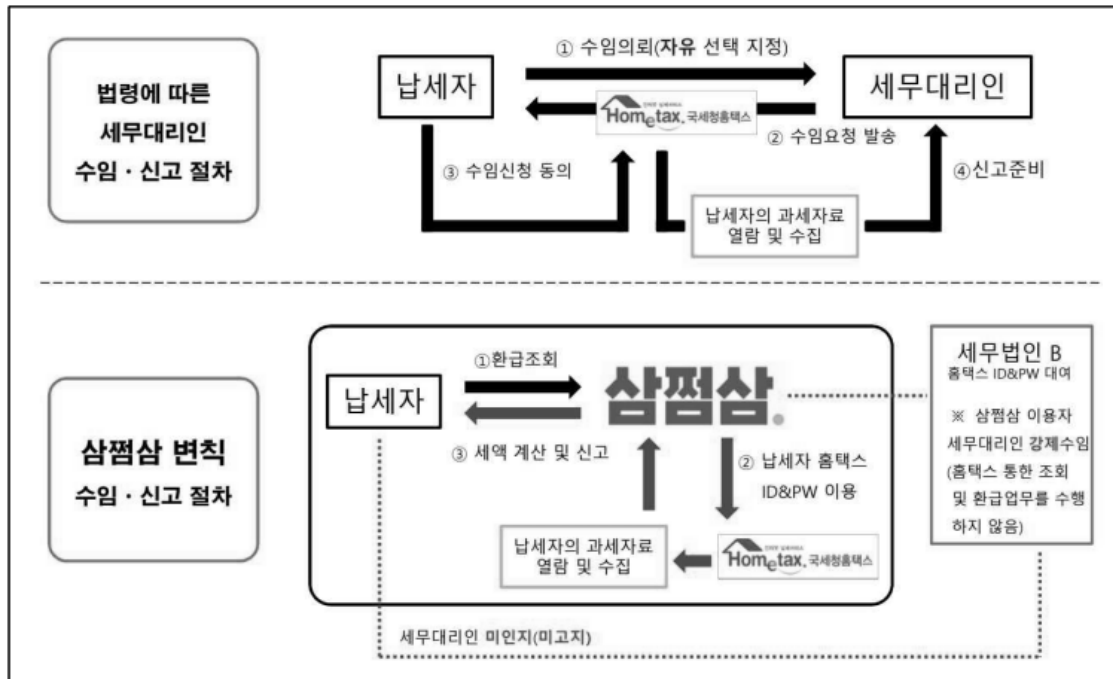
[illegible]

- ⑧ 최종적으로 개인사업자 본인의 국세청 홈택스 ID/비번을 삼점삼에게 제공
- ⑨ 삼점삼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한 후 개인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ID/비번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신고서를 제출

수사기관은 납세자가 직접 환급 신청서를 작성한 셀프 환급신청 서비스로서 그 과정에서 삼점삼이 단순한 세액 계산을 해 준 것은 세무 대리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납세자는 수입동의(④)와 부양가족 입력(⑦) 및 본인의 국세청 홈택스 아이디와 비번을 삼점삼에 제공해 준 것 밖에 없는데, 어떠한 측면에서 납세자가 직접 환급 신청서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였다. 오히려 삼점삼이 납세자의 환급신청서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주도적으로 작성하여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삼점삼이 단순한 세액 계산을 넘어 불법적인 세무대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표 4>의 불법 세무대리 유형으로서 세무회계 프로그램으로 신고서 등을 작성한 후 세무사 명의로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는 기존의 불법 세무대리(이하 “기존의 불법 세무대리”라 한다)를 변칙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기존의 불법 세무대리와 삼점삼의 불법 세무대리는 조세(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서 작성 및 신고는 직접 하였지만 신고의 형식에서 삼점삼은 기존의 불법 세무대리와 다르게 세무대리인의 명의를 아닌 납세자의 국세청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신고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삼점삼이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은 삼점삼이 직접 신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삼점삼이 납세자에게 환급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두 곳의 파트너 세무사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지급명세서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후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여 납세자의 환급금이 얼마인지 알려 줌으로써 삼점삼은 환급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미 종합소득세를 직접 계산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삼점삼이 단지 신고의 형식만 납세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서 한 것을 가지고 납세자가 환급 신청서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직접 작성하고 삼점삼은 단지 단순한 세액 계산만을 해 주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대법원은 기존의 불법 세무대리에 대해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 규정’이라고 한다)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무대리’란 세무사가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세무대리’에는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가 포함된다(세무사법 제2조 제1호). 이들 규정의 입법

〈그림 3〉 세무 대리인과 삼점삼의 세금 신고 비교



※ 출처 : 한국조세정책학회,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세무대리 행위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2023, 41면.

취지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무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세무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세무대리행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처벌규정과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세무사법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조세에 관한 신고 등의 ‘세무대리’를 한 경우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의 지휘·감독 없이 납세자를 대리하거나, 대리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더라도 납세자를 대신하거나 사실상 신고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세무지식의 이용이 필요한 신고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이하 “기존의 불법 세무대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³⁰⁾

기존의 불법 세무대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세무대리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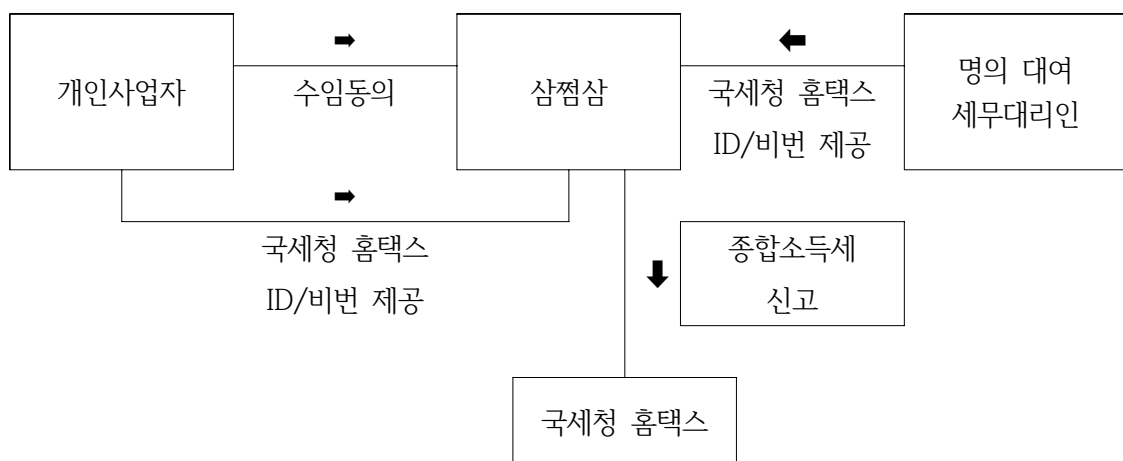
30) 대법원 2020.05.28. 선고 2015도8490 판결.

첫째,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의 지휘·감독 없이 납세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둘째,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더라도 납세자를 대신하거나 사실상 신고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세무지식의 이용이 필요한 신고 등을 한 경우를 말한다.

수사기관이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삼점삼의 셀프환급 신청 서비스는 위의 판결 두 번째에 해당하는 불법 세무대리에 해당한다. 삼점삼은 개인사업자를 대신하여 사실상 신고를 주도(그림 2 ⑨)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개인사업자가 직접 하는 형식(그림 2 ⑧)을 취하였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지식이 필요한 신고로서 소득금액 산정.과세표준 산정.산출세액 산정.납부세액 산정의 절차를 취하는데, 특히 소득금액 및 산출세액의 산정은 고도의 세무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하는데, 필요경비는 장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실지 필요경비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일정비율을 필요경비(이하 “경비율로 산정하는 필요경비”라 한다)로 산정한다. 경비율로 산정하는 필요경비도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업종에 적용되는 경비율을 파악하여야 한다. 산출세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과세표준은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바 소득공제와 종합소득세율에 대한 세무지식의 구비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삼점삼이 제공한다는 셀프신청 환급서비스는 불법 세무대리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제 세무대리에 해당하는 위임과 대리로서 수임의 주

〈그림 4〉 수임과 대리의 주체



체와 대리의 주체는 누구인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의 주체와 세무 대리를 한 주체는 각각 두 곳의 파트너 세무사(이하 “명의 대여 세무대리인”이라 한다)와 삼쩜삼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쩜삼의 세금 환급 서비스는 세무대리로서 수임과 대리의 주체가 서로 다르다. 일반적인 세무 대리는 위임과 대리가 동일한 세무대리인이지만 삼쩜삼은 수임은 명의 대여 세무대리인이 하지만 대리는 삼쩜삼이 개인사업자로부터 국세청 홈택스의 아이디와 비번을 제공받아 직접 수행한다. 삼쩜삼이 제공하는 셀프환급 신청 서비스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주도적으로 함으로써 불법 세무대리에 해당하여 대리의 주체를 삼쩜삼으로 보는 것에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보인다. 다만, 명의 대여 세무대리인이 수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삼쩜삼은 1차적으로 환급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환급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납세자에게 수임동의를 요청하고 있다. 수임동의를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조세의 신고 등을 위임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통상적으로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조세 신고 등 세무대리 행위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그 세무대리인에 대한 수임동의를 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수임동의를 하면 세무대리인에게 본인의 조세 신고 등에 대한 위임과 동시에 대리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후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임동의를 해지함으로써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대리권을 철회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수임동의를 한 세무대리인은 수임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삼쩜삼에서 개인사업자가 수임동의를 하는 자는 명의 대여 세무대리인으로서 그들이 수임의 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자가 삼쩜삼에서 환급조회를 위해 수임동의를 한 경우에는 그 수임동의를 해지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국세청 홈택스에 수임인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는 포털 사이트에서 삼쩜삼 수임동의 해지 방법을 검색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³¹⁾ 그렇다면 명의 대여 세무대리인은

31) 최근 SNS에서 세금환급 플랫폼인 ‘삼쩜삼’ 가입자들의 세무대리인 해지 방법을 공유하는 글이 잇따르는 가운데, 해당 세무법인의 홈페이지에도 세무대리인 해지 요청과 비난 글이 쇄도하고 있다(이대희, “분노한 삼쩜삼 이용자들, 세무법인 스타밸류에 격한 ‘항의 글’ 왜?”, <https://www.intn.co.kr/news/>(검색일 : 2023.04.03.) ; 온라인 세무대행 서비스 ‘삼쩜삼’이 이슈의 중심에 섰다. 삼쩜삼을 통해 세금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본인도 알지 못하는 세무대리인이 국세청에 자동 등록된다는 것이다. 세무대리인은 국세청에 등록해 의뢰인의 정보를 대신 확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문제는 기존 세무대리인이 지정돼 있다고 해도 시험 삼아 삼쩜삼에 가입 후 세금 조회를 할 시 기존 세무대리인은 사용자에게 통보 없이 자동 해임된다는 점이다. 세무대리인이 없는 사용자의 경우 자신이 알지 못하는 세무대리인이 자동으로 등록된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황정호, “삼쩜삼 세금 조회하니... 나도 모르는 세무대리인이 국세청에 등록됐다?”, <https://www.tech42.co.kr/>(검색일 : 2023.04.03.).

삼점삼의 불법 세무대리를 위해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다. 명의 대여 세무대리인의 명의 대여에 대한 검토”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2) 자비스 세무대행

기존의 회계.세무 프로그램은 법인사업자가 그 프로그램을 개별 구매.사용하여 그 법인사업자가 장부 작성 및 각종 세무신고를 직접 하였다. 그러나 자비스 세무대행은 법인사업자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자비스”라는 플랫폼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자비스앤빌런즈(이하 “회사”라 한다)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면 유상으로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다(이렇게 자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솔루션을 이용하는 법인사업자를 “회원”이라 한다). 솔루션은 회원이 경영지원 업무를 모바일 및 PC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집합을 말하는데, 경영지원 업무란 회원의 경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세무.노무.법무.총무 등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를 말한다. 회사가 제공하는 솔루션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³²⁾

- ① 회원이 전자적으로 제공한 종이 영수증의 판독, 텍스트화 및 보관
- ② 회원이 경영지원 업무에 관하여 제공한 정보의 가공, 처리 및 저장을 통한 **각종 신고 및 등록**
- ③ 회원이 위 ①.②의 정보를 제공하고 열람하는데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의 제공
- ④ 회원과 회사가 위 ①.②.③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

자비스 세무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인공지능 경리와 세무대행 두 가지 이다. 인공지능 경리는 자체적으로 재무 관리를 하거나 다른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는 기업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서비스를 말한다.³³⁾

- ① 금융정보 통합 조회/관리
- ② 전용 앱을 통한 영수증 관리
- ③ 다양한 형식의 리포트 제공
- ④ 급여 계산 및 급여 대장 관리

32) 자비스, “자비스 이용약관”, <https://help.jobis.co/>(검색일 : 2023.04.04.).

33) 자비스, “요금 안내”, <https://help.jobis.co/>(검색일 : 2023.04.04.). 회사의 금융정보를 확인해 잔고와 재무 현황을 자동으로 집계해 주는 서비스로서 월 이용료는 33,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세무대행은 담당 세무대리인이 배정되며 그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되는 세무대행 서비스의 범위는 인공지능 경리를 포함하여 <표 5>와 같다.³⁴⁾

〈표 5〉 세무대행의 업무 범위³⁵⁾

기본 수행 업무 (세무대행 월 이용료에 포함된 업무)	별도 과금 업무 (세무대행 월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
① 복식부기 기장 (장부 작성)	①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② 부가가치세 계산 및 신고대행	② 주식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
③ 급여 계산 및 관련 신고대행	③ 양도소득세/증여세 신고 및 상담
④ 4대보험 업무대행	④ 가결산 (재무제표 작성 포함)
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⑤ 법인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⑥ 세무 상담 및 각종 세무이슈 안내	⑥ 수정신고 및 기한후신고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자비스 세무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자비스 세무대행의 업무 범위

주요 기능	인공지능(AI) 경리	세무대행 패키지
모든 금융정보 통합 조회 관리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은행계좌, 신용카드, PG사 등 모든 거래내역 자동 조회	○	○
전용 앱을 통한 영수증 관리		
개인카드 지급 관리	○	○
사용자/금액/증빙별 필터링	○	○

34) 자비스, “요금 안내”, <https://help.jobis.co/>(검색일 : 2023.04.04.). 자비스 공식 파트너 세무대리인을 통해 모든 세무/회계 업무를 올인원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로서 월 이용료는 80,000원(사업자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부가가치세 별도)이다.

35) 자비스, “자비스 서비스 이용료”, <https://help.jobis.co/>(검색일 : 2023.0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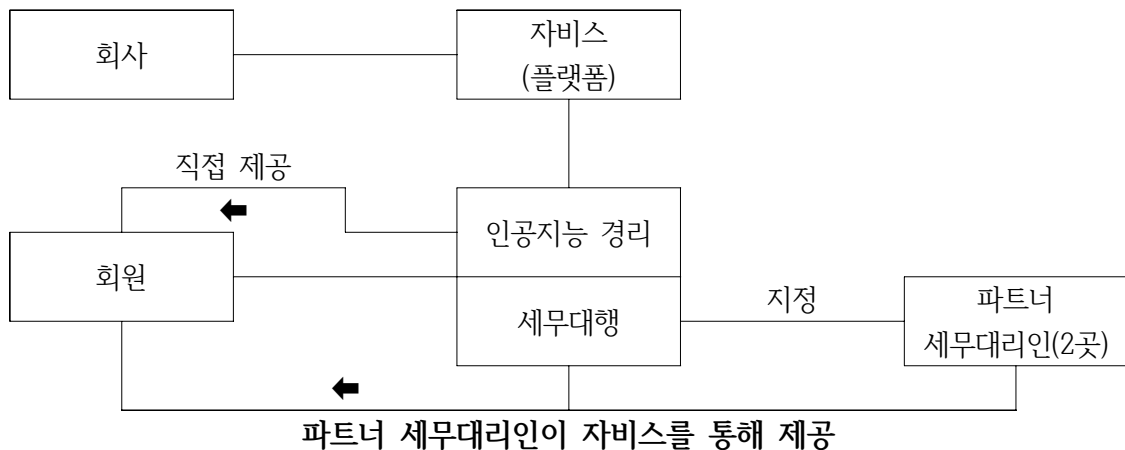
주요 기능	인공지능(AI) 경리	세무대행 패키지
영수증 내역 엑셀 다운로드	○	○
다양한 형식의 리포트 제공		
일별 통합잔고/매출/매입 리포트	○	○
계좌별/증빙내역별/거래처별/카드별 결제 현황 조회	○	○
월간 매출/수익 현황 및 월별 지출내역 비교 관리	○	○
거래내역으로 자동 매칭한 미수금/미지급금 관리	○	○
급여 계산 및 급여 대장 관리		
4대 보험 연동으로 정확한 급여계산	○	○
간편 급여이체 가능(하나은행 연동)	○	○
직원별 급여명세서 원클릭 발송	○	○
직원 급여 및 기본정보 관리	○	○
전담 세무대리인을 통한 기장 및 세무 상담		
전문 세무사를 통한 1:1 세무 상담 및 업무 지원	×	○
복식부기 기장(장부 작성)	×	○
각종 세금 신고 대행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	×	○
원천세 신고 및 공제내역, 퇴직금 계산	×	○
법인세 신고 및 세무조정(별도 과금)	×	○
종합소득세 신고(별도 과금)	×	○
인건비 처리 및 급여 관리		
근로자 소득 유형별 4대 보험 관리, 취득/상실 신고	×	○
연말정산 신고, 연말조정 안내서, 소득공제 자료 검토	×	○
요청시 대행(별도 과금)		
월/분기 결산 및 분개, 재무제표 작성	×	○
양도, 증여, 상속세 신고 및 상담 등	×	○

※ 출처 : 자비스, “요금 안내”, <https://help.jobis.co/>(검색일 : 2023.04.04.)

회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자비스 세무대행이 영수증 전산화 등 단순한 자료수집 서비스에 불과하거나 고객과 파트너 세무사를 연결할 뿐 회사가 직접 세무대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세무대리인에 의해 신청서가 작성된 경우 세무사의 지휘 감

독이 있는 경우에는 무자격 세무대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즉, 회사가 제공하는 자비스 세무대행은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공지능 경리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대행은 파트너 세무대리인이 장부작성 및 세금 신고 등을 직접 한 것으로서 회사가 직접 세무대리를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³⁶⁾ 그렇다면 자비스 세무대행의 세무대행 서비스를 자비스라는 플랫폼과 파트너 세무대리인 중 누가 직접 수행하였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비스 세무대행의 업무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자비스(<https://help.jobis.co/>) 홈페이지의 “고객센터” 중 “세무가이드”의 “세무/회계 Q&A”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자비스 세무대행의 업무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비스의 세무대행으로서 세금신고의 절차는 ① 자비스(세금 신고 자료 제출 방법과 진행일정 안내) → ② 고객님(일정에 맞춰 자료를 제출) → ③ **자비스(세금 신고)** → ④ 고객님(세금 납부)로서 자비스 세무대행은 회원의 세금 신고를 직접 한다고 자사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또한, 자비스의 세금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으로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의 신고와 납부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의 방법에 대해 자비스는 <그림 7>, <그림 8>, <그림 9>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36) 수사기관이 한국세무사회에 통보한 수사결과 통지서의 내용이다.

〈그림 6〉 자비스 고객센터 중 세무가이드의 세무/회계 Q&A

Jobis | 고객센터

자비스 홈으로

자비스 고객센터 > 세무 가이드 > 세무/ 회계 Q&A

검색

세무/ 회계 Q&A

[자본금] 법인통장을 만들었는데 자본금 입금은 언제 하면 되나요?

[납부] 세금 미납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결산] 재무제표 작성 시 계정과목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매출] 대금 미수취 시 세금계산서 발행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매출]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현금매출을 법인매출로 처리할 수 있나요?

[비용처리] 연접비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기본] 법인세/ 부가세/ 원천세 등 등 각종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업데이트 시간 3개월 전

세금신고의 간략한 진행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자비스 : 세금 신고 자료 제출 방법과 진행일정 안내
- ② 고객센터 : 일정에 맞춰 자료를 제출
- ③ 자비스 : 세금 신고
- ④ 고객센터 : 세금 납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법인세 신고와 납부\(클릭\)](#)
- [부가세 신고와 납부\(클릭\)](#)
- [원천세 신고와 납부\(클릭\)](#)

출처 : 자비스(<https://help.jobis.co/>)

〈그림 7〉 법인세 신고 자료 제출

자비스 고객센터 > 세금 신고/납부 > 법인세 신고와 납부

법인세 신고와 납부

법인세 신고 제출자료 및 제출방법

■ 법인세 제출자료

고객사에서 제출이 필요한 법인세 자료는 필수자료와 추가자료로 나뉩니다.
각 제출자료는 자비스 [세금신고>법인세] 메뉴의 항목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필수자료**는 모든 법인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아래의 각 항목별 링크를 클릭하시면 조회방법 확인이 가능합니다.)
 - [법인통장 계좌내역](#)
 - [법인카드 해외 승인 내역](#)
 - [주주명부](#)
 - [임대차 계약서](#)
 - [법인계좌 이자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법인 등기부등본](#)

■ 자비스 시스템에 자료 제출하기

1. [업무현황] 메뉴에 등록된 법인세 공지를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전 필수적으로 확인 필요한 안내가 있으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세금신고>법인세] 메뉴에서 항목 별로 각 자료를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자료는 모든 법인대상으로, 추가 자료는 우리회사에 해당되는 자료만 업로드해주세요.

- 이전에 제출한 자료가 있더라도, 정확한 확인을 위해 법인세 메뉴에 자료를 꼭 등록 부탁드립니다.

법인세 자료제출

- 제출된 자료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슈퍼관리자 및 관리자에게 안내 메일이 발송됩니다.
- 자료별 발급 방법은 고객센터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자료

항목	자료유형	파일추가	업로드된 파일
필수	통장내역	파일추가	파일 선택 통장내역.zip
	법인카드 해외송인내역	파일추가	파일 선택 해외 사용내역.zip
	주주명부	파일추가	파일 선택 주주명부.pdf
	임대차계약서	파일추가	파일 선택 임대차계약서.pdf
	법인계좌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파일추가	파일 선택 원천징수영수증.zip
	법인 등기부등본	파일추가	파일 선택 마코마코_법인등기부등본.pdf

출처 : 자비스(<https://help.jobis.co/>)

〈그림 8〉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제출

자비스 고객센터 > 세금 신고/납부 > 부가세 신고와 납부

부가세 신고와 납부

[공통-제출방법] 부가세 자료 자비스 제출방법

■ 부가세 제출자료

부가세 자료는 제출불필요 자료와 제출필요 자료로 나뉩니다.

- **제출불필요 자료**는 매출, 매입의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현금영수증, 법인카드 사용 내역으로 홈택스 수입동의를 통해 자동으로 수집 가능한 데이터로 별도 전달없이도 신고에 반영해드립니다.
- **제출필요 자료**는 홈택스에서 수집 불가한 데이터로 [부가세] 신고 메뉴를 통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부가세 제출필요 자료 및 조회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 자비스 시스템에 자료 제출하기 (파일 업로드)

1. [업무현황] 메뉴에 등록된 부가세 공지를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전 필수적으로 확인 필요한 안내가 있으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세금신고>부가세] 메뉴에서 항목별로 각 자료를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자비스(<https://help.jobis.co/>)

〈그림 9〉원천세 신고 자료 제출

자비스 고객센터 > 세금 신고/납부 > 원천세 신고와 납부

원천세 신고와 납부

간편 세금 납부 (하나은행)

원천세와 원천징수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안내

원천세(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가이드

소득유형별 원천세율

지급명세서란?

원천세(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가이드

업데이트 시간 1개월 전

자비스 세무대행 이용 고객사의 경우,
마감된 급여대장을 바탕으로 세무담당자가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고,
원천세 신고가 완료되면 왼쪽 [세무신고>원천세] 메뉴를 통하여 납부서를 전달드립니다.
납부기한,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을 확인하셔서 꼭 기한 내에 납부 부탁드립니다.
(신고는 자비스가 대행하지만, 납부는 사업자가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 원천세 납부 기한이 지난 후 자진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원천세 자진납부 방법 알아보기\(클릭\)](#)

출처 : 자비스(<https://help.jobis.co/>)

<그림 6>부터 <그림 9>까지의 법인세 등 신고 자료 제출은 자비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으로서 자비스라는 인공지능 플랫폼이 직접 세무대리를 수행한 것이다. 세무대리는 납세자의 위임과 대리의 형식을 띠는데, 자비스 세무대행은 납세자를 회원으로 하여 회원의 위임을 받은 후 회원의 장부작성 및 조세의 신고(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세)의 대리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그 법률효과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의 확정을 회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없이는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자비스는 두 곳의 파트너 세무사로부터 국세청 홈택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회원의 법인세 신고 등 세금 신고를 직접 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회사는 자비스라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해 직접 세무대리를 한 것이고 두 곳의 파트너 세무사는 세무대리 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은 명의대여를 한 것과 동일하다. 파트너 세무사의 명의대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래의 “다. 명의 대여 세무대리인의 명의 대여에 대한 검토”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2021.05.31. 기준으로 자비스 세무대행의 누적 회원 수는 56,889개사이고 누적 거래관리 금액은 32.6조원으로서 영수증 입력 건수는 942,860건이라고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회사는 자비스라는 인공지능 플랫폼에서 회원들의 조세의 신고 등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자비스 세무대행의 불법 세무대리를 통해 회사가 창출한 수익은 매 월 대략 45.5억원(56,889×월 8만원)으로서 막대한 불법 수익금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³⁷⁾ 또한, 두 곳의 세무대리인이 56,889개사의 회사들을 지휘·감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무대리는 자비스에 의해 행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 10〉 자비스 세무대행의 회원 수

이미 많은 회사들이 자비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56,889개사

누적 가입 고객사

32.6조

누적 거래관리금액

942,860건

영수증 입력 건수

2021년 5월 31일 기준

37) 자비스 세무대행은 월 8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누적 회원수에 월 8만원의 수수료를 곱한 금액으로서 법인세 신고에 따른 조정료 금액까지 감안한다면 불법 세무대리로 창출한회사의 불법 수익금은 막대할 것으로 추측된다.

다. 세무대리인의 명의 대여에 대한 검토

(1) 삼점삼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점삼은 해당 플랫폼에 가입한 가입자에게 우선적으로 환급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환급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원천징수세액의 파악과 종합소득세를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가입자의 원천징수세액의 파악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급명세서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의 국세청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즉, 가입자의 위임에 의해 세무대리인이 수임을 하여 그 가입자의 지급명세서 등 과세자료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삼점삼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삼점삼에 가입한 가입자에게 환급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연적인 절차로서 세무대리인의 수임등록 및 가입자의 수임동의가 필요하다. 즉, 수임등록은 세무대리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조회 및 이용하기 위해 수임납세자를 등록하고 그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의 수임에 동의하면 된다.³⁸⁾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납세자가 삼점삼에 가입하면 삼점삼은 명의 대여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국세청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활용하여 가입자를 수임등록 한다. 이후 가입자가 환급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수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가입자의 수임동의로 삼점삼은 그 가입자의 지급명세서 등 각종 조세자료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입자가 수임동의 함으로써 세무대리의 위임을 삼점삼과 명의 대여 세무대리인 중 누구에게 한 것인가? 삼점삼이 가입자의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한 후 그 자의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 환급금액을 직접 알려주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수임자는 삼점삼이고 형식적으로는 명의대여 세무대리인일 것이다. 만약, 명의대여 세무대리인이 삼점삼 가입자의 실질적인 수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세무대리인이 직접 가입자의 원천징수세액 확인 및 그 자의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 환급금액을 가입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는 명의 대여 세무대리인이 아닌 삼점삼이 직접 수행한 것이다. 따라서 명의대여 세무대리인은 삼점삼이 가입자의 원천징수세액의 확인과 종합소득세 산정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 자신의 명의를 삼점삼에게 제공한 것이다.

수사기관은 명의 대여 세무대리인의 명의 대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그러한 판단의 전제는 바로 삼점삼의 가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정 및 신고가 불법 세무대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Ⅲ.2.나.(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납세자의 직접

38) 세무법인 한울,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절차”, <https://www.hanultax.co.kr/>(검색일 : 2023.04.06)

신고 방식을 취했지만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산정은 삼점삼이 직접 수행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삼점삼은 납세자에 대한 조세의 신고라는 불법 세무대리를 한 것이다. 따라서 명의 대여 세무대리인의 명의대여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결정은 타당하지 않다. 삼점삼이 그 플랫폼의 가입자들에게 환급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삼점삼의 조세의 신고라는 불법 세무대리가 가능하도록 명의 대여 세무대리인이 명의를 대여해 주었기 때문이다. 즉, 명의 대여 세무대리인이 국세청 홈택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삼점삼에게 제공해 주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삼점삼은 그 앱의 가입자에게 환급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없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명의 대여 세무대리인이 국세청 홈택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삼점삼에 제공해 주었고, 그러한 사실로 삼점삼의 불법 세무대리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명의 대여 세무대리인은 삼점삼에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다.

(2) 자비스 세무대행

수사기관은 파트너 세무대리인이 자비스 세무대행의 회원들에 대해 나의 세무대리인 지정 및 그 회원들의 조세 신고서 제출이 파트너 세무대리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파트너 세무대리인의 명의 대여에 대해서는 그 세무대리인이 직접 세무대리를 하였기 때문에 명의 대여가 아니라는 결정을 하였다. 그 이유는 파트너 세무대리인이 자비스 세무대행에 대한 지휘.감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Ⅲ.2.나.(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비스 세무대행의 회원들에 대한 법인세 등 모든 조세의 신고는 자비스라는 인공지능 플랫폼이 직접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에 파트너 세무대리인의 지휘.감독이 개입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비스 세무대행은 1차적으로 인공지능 경리로 자동분개 등을 통해 회원들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 회원들의 법인세 등의 신고 자료 수취 및 신고를 자비스라는 인공지능 플랫폼에서 직접 이루어진 사실을 감안하면 파트너 세무사가 자비스의 조세 신고라는 불법 세무대리에 대한 지휘.감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2021.05.31. 기준으로 자비스 세무대행의 누적 회원 수가 56,889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 두 곳의 세무대리인이 그 회원을 모두 관리 감독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비스 세무대행은 장부작성과 조세의 신고(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세) 모두를 자비스라는 인공지능 플랫폼이 수행하고 파트너 세무사는 단순히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다.

3. 챗GPT를 활용한 인공지능의 세무 서비스 한계와 불법 세무대리

가. 문제의 소재

국세청은 2023.03.22. 국세행정개혁위원회³⁹⁾에서 인공지능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 공하기로 하였는데⁴⁰⁾, 세부 내용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인공지능을 통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구분	내용
맞춤형 추천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개인별로 10여 개의 메뉴를 추천*하는 맞춤형 포털 개발 * 사용자의 홈택스 사용 내역을 분석하여 이용 시기에 맞춰 맞춤형 메뉴 추천
AI 기반 상담	‘챗GPT’ 등 차세대 AI 기반으로 상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납세자에게는 세무 상담을, 직원에게는 업무상담 수행
업무 재설계	전체 업무 프로세스(신고·납부·고지·민원 등)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관 점으로 홈택스 5,300개 화면을 전면 재설계

기존의 국세청 홈택스 운영은 납세자 관점보다는 과세권자의 조세 징수라는 측면에서 운영 되었다. 이는 납세자의 이용 편리성보다는 과세권자의 조세 행정에 대한 편의 위주로 국세청 홈택스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반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신의 조 세 신고를 스스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 운영을 공급자 중심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업무 재설계는 국세청 홈택스가 기계학습을 통해 과세권자 아 닌 납세자의 관점에서 조세의 신고를 쉽고 편하게 하는 것이고 AI 기반 상담은 기존에 국세청 상담센터(<https://call.nts.go.kr/>)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상담 및 국세청의 서면질의에 챗

39) 국세행정개혁위원회란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변화 · 발전방안, 세무조사의 공정성 · 투명성 확보 방 안, 납세자 권익보호 등 세정 주요 사안에 대한 심의 · 자문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https://d.nts.go.kr/>(검색일 : 2023.04.12.).

40) 국세청, 『2023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 ‘디지털로 혁신하는 납세자 중심의 국세행정 구현’ 등 결의 -』, 2023, 9면.

GPT를 활용한 조세 상담을 추가한 것이다.

챗GPT는 오픈AI(OpenAI)가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AI) 모델 GPT-3.5를 기반으로 제작한 대화형 서비스이다.⁴¹⁾ 오픈AI는 샘 알트먼 및 일론 머스크 등이 합심해 2015년 설립한 기업으로서 그 설립 목적은 인류에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AI)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⁴²⁾ 챗GPT는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단순한 답변 수준을 넘어 영화 시나리오·소설·금융 보고서·계약서·제안서·강의 커리큘럼 등 다양한 콘텐츠를 창의적인 형태의 제작이 가능하다. 향후 오픈AI는 Bing(Bing) 검색 엔진⁴³⁾에 챗GPT를 결합한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검색을 할 때 사용자 질문에 더 완전한 답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Microsoft는 챗GPT를 워드·엑셀·파워포인트 같은 오피스 제품군에도 통합할 계획이다.⁴⁴⁾ MS의 오피스프로그램으로서 워드 및 엑셀 등에 챗GPT의 기능이 접목되면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는데, 이는 오피스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사무직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제2의 MS 오피스프로그램의 혁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큰 기대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법률·행정·세무 등의 상담을 챗GPT가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⁴⁵⁾

챗GPT를 활용한 세무 상담은 이미 민간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고⁴⁶⁾ 국세청은 홈택스 고도화 작업으로서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라 추후 챗GPT를 활용하여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⁴⁷⁾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조세의 상담에 대한 세무 대리로서 대리권의 존재 여부이다. 국

41) 삼일PwC경영연구원, 앞의 논문, 2면.

42) 이후 머스크는 2018년 테슬라가 개발하는 AI와 이해 상충관계를 이유로 이사회에서 사임했는데, 이때 새로 등장한 투자자가 마이크로소프트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 10억 달러를 투자한 후 2023년에는 1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함으로써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있다(이영진, 『Generative AI의 슈퍼스타 - ChatGPT, 미래를 보여줘! -』, 2023, 6면).

43) Microsoft가 만든 검색 엔진이다. Windows Live Search(옛 MSN 검색)란 검색 엔진을 2009.06.01. 개편한 것으로서 뭔가 떠올렸을 때 내는 소리(Bingo!)와 비슷하다. 동사로 쓸 수 있다(예를 들어 "I binged it")는 점을 고려해서 선택되었다(나무위키, "Microsoft Bing", [https://namu.wiki/\(검색일 : 2023.04.12.\)](https://namu.wiki/(검색일 : 2023.04.12.))).

44) 이상헌, 『챗 GPT로 AI 골드러시 시대 도래』, 2023, 11면.

45) 이명호, "챗GPT, 생성형 AI가 가져올 전문 서비스 혁명", <https://www.etoday.co.kr/news/view/> (검색일 : 2023.04.12.).

46) 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삼점삼'을 운영하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는 챗GPT 기반 세금 상담 챗봇 'AI 점삼이' 베타 버전을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연말정산 등과 관련된 질문에 즉시 맞춤형 답변을 해 준다고 자비스앤빌런즈는 설명했다. 답변과 함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내용의 출처도 함께 제공한다. 서비스는 삼점삼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AI 점삼이'에는 자연어 인지검색 솔루션 기업 올거나이즈가 만든 '알리GPT'가 활용됐다. 올거나이즈 자체 AI 챗봇 '알리'에 챗GPT 기반 모델 GPT-3.5를 결합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임성호, "'AI와 세금상담해요'...삼점삼, 챗GPT기반 세금상담 챗봇 출시", [https://www.yna.co.kr/view/\(검색일 2023.04.13.\)](https://www.yna.co.kr/view/(검색일 2023.04.13.))).

세청에서 제공하는 세무 상담은 대국민에 대한 국가의 행정서비스로서 당연히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는 챗GPT를 활용한 세무 상담은 일정 부분 한계를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고도화함으로써 조세의 신고 및 세무 상담을 일반 납세자에게 편리하고 쉽게 제공하는 것은 어쩌면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편리성을 제고 한다는 명목으로 챗GPT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이라는 플랫폼 서비스로 제공되는 조세의 상담 등에 대한 불법적인 세무대리 행위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단락을 바꾸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과세권자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세무 서비스의 한계

국세청은 2023.03.22.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전문가 도움이 필요 없는 누구나 쉽고 편리한 홈택스로 개편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모바일을 통해 대화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2023년 개선과제(220건)의 지속적인 추진과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질의 응답형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특정업종) 부가가치세 신고와 양도소득세 신고(1세대 1주택) 등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⁴⁸⁾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것으로서 납세자의 조세 신고와 조세 상담 두 가지에 대한 편리성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납세자의 조세 신고 및 조세 상담은 국세청 홈택스에 인공지능을 결합한 것으로서 조세의 신고는 기계학습을 통해 기존의 복잡하고 어려운 신고 방식을 쉽고 편리하도록 개선하는 것이고 조세의 상담은 기존의 인터넷 상담 및 서면 상담에서 챗GPT를 활용한 세무 상담을 하나 더 추가한 것이다. 이러한 업무는 국세청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이고 기존에 하던 업무의 연장선으로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조세의 신고 및 조세의 상담이 간편하고 쉬워진다면 세무대리인을 활용할 수 없는 영세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보도 자료에서 “전문가 도움이 필요 없는 누구나 쉽고 편리한 홈택스로 개편 추진”이라는 제목을 상정하면서 마치 세무대리인이 없어도 모든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로 자신의 조세 신고가 가능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⁴⁹⁾ 이로 인해 조세의 신

47) 국세청, 앞의 논문, 9면.

48) 국세청, 전제 논문, 8면.

49)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 위원회는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세금을 신속·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비대면 납세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모바일을 통해 대화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질의응답형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특정업종) 부가가치세 신

고가 기존의 세무대리인에서 국세청 홈택스로 전환되면서 세무대리인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⁵⁰⁾, 이는 지나친 기우(杞憂)로서 과거 및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여전히 납세자에 대한 조세의 신고는 세무대리인에 의해 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세청 홈택스의 본래의 역할은 가장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조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 등 우리나라 조세의 대부분은 신고주의 세목으로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함으로써 조세를 징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세무대리인을 활용하지 못하는 영세 납세자 등은 필연적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신의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세청은 영세 납세자 등에 대한 조세 징수의 효율성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그 인공지능으로 납세자의 조세 신고 등에 대한 편리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국세청 홈택스는 국세청 내부의 국세통합시스템(TIS: Tax Integrated System)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2002.11.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신고와 민원을 위해 만든 후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2015.02.23. 통합된 형태의 홈택스 서비스⁵¹⁾로 개통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⁵²⁾ 중소기업은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 등을 포함한 세무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서 만족 67.2%(매우

고와 양도소득세 신고(1세대 1주택)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세무대리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 사업자나 비사업자에게 접근성·편의성이 높은 모바일 위주 서비스를 제공할 방 영세 사업자에게 창업·세금신고·납부·상담까지 사업 라이프 사이클 모든 과정을 모바일로 제공할 예정이다(김온유, “세무상담부터 직원상담까지.. 국세청, '챗GPT' 탑재한다”, <https://www.payzon.co.kr/pzNews/> (검색일 : 2023.04.13.)).

- 50) 국세청이 '디지털 혁신'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개편의 핵심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선 간편 신고 서비스는 모바일 위주로 개편한다. 세무대리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나 비사업자일수록 모바일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창업에서부터 세금의 신고납부, 상담까지도 모바일에서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영상통화와 카메라를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사업자등록 현지 확인이나 전자신고까지 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목표다. 당장은 영세사업자를 위주로 서비스를 시작하지만, 추후 신고과정이 복잡한 일반 사업자에게까지 서비스를 확장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상원, “국세청도 AI서비스, '세무사 없는' 시대 준비하나”, <http://news.bizwatch.co.kr/> (검색일 : 2023.04.13.)). 이제 세무사의 신 'AI세무사'가 출현하기 전에 국세청 홈-택스가 먼저 세무사들을 위협하는 모양새다. 국세청의 계획대로 홈-택스에 '챗GPT' 인공지능이 장착될 경우 세무사들이 해야 할 일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세무사법 제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세무사의 직무 가운데 핵심 업무인 조세에 관한 신고와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이 사라지는 것이다(최찬희, “‘위기의 세무사’ 해결사가 없다”, <https://www.sejungilbo.com/news/> (검색일 : 2023.04.13.)).
- 51) 기존의 분리된 개별적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세청 “홈택스”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항옥선, “소셜 네트워크 빅 데이터 관심이슈 추출을 통한 ‘홈택스’ 이용현황 분석, 『세무와회계저널』 제22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2021, 84면).
- 52) 정성모 외 2인, “통합된 홈택스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이용자만족도와 성과에 관한 연구”,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제59권 제2호, 한국공인회계사회, 2017, 201면).

만족 11.2% + 대체로 만족 56.0%)이고 5점 만점의 평균 3.74점으로 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다. 매출액 200억 이상 기업의 경우 만족 응답이 73.7%(매우 만족 18.9% + 대체로 만족 54.7%)로 타 기업 대비 매우 높게 평가되었다. 세무 행정서비스의 불만족 사유로는 “기타 의견”이 36.4%로 가장 높았는데, 기타 의견은 “전화 연결 지연” 및 “사이트 접속 지연”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복잡한 세금신고 절차 및 서류 제출(27.3%)에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종업원 수 50인 이상 기업 및 매출액 100억 미만 기업은 ”복잡한 세금신고 절차 및 서류 제출“에 대한 불만족이 4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무 행정서비스의 불만족에 대한 대응방법은 “기타 의견”이 47.8%로 가장 많았는데, 기타 의견은 “세무대리인 또는 세무대행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즉시 행정담당자에게 불만족한 사항 개선 요구”(26.0%) 및 “마땅한 방법이 없어 대응하지 못함”(14.0%) 순으로 나타났다.⁵³⁾ 중소기업의 회계장부 기장 및 세무조정 방법은 “자체기장+세무사 등 외부조정“(50.6%) 방법을 활용하는 기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위탁기장+외부조정“(42.4%)이고 마지막으로 “자체기장 및 자가 세무조정”(7.0%) 순으로 나타났는데, 종업원 수 50인 미만 기업과 매출액 100억 미만 기업은 ”위탁기장+외부조정“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위탁기장 또는 외부조정을 의뢰한 이유는 “조세지원제도 활용 등 세무전문 서비스 필요”(37.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장 및 조정 업무 효율화와 편리성 차원”(36.1%)이고 마지막으로 “자체 처리능력 부족”(17.0%)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세무처리 및 신고 상 어려움으로 “빈번한 세법개정 및 이해부족”(35.8%)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세무조정사항 및 제출서류 복잡”(27.4%)이고 마지막으로 “회계·세무 전문인력 부족”(24.6%)으로 나타났는데, 매출액 200억 이상 기업은 “빈번한 세법개정 및 이해부족” 어려움이 41.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새로운 세무행정 정보나 조세지원책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로 ”세무대리인“(58.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세청 홈택스“(21.2%)이고 마지막으로 “인터넷채널”(14.2%)이다.⁵⁴⁾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회계장부 작성 및 세무조정 방법으로 위탁기장 또는 외부조정이 90%로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세무대리인을 통한 조세지원 제도 활용 및 세무 전문 서비스의 필요성과 새로운 세무행정 정보 및 조세지원책 정보를 세무대리인을 통해 가장 빨리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매년 개정되는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상당 수 중소기업이 조세의 신고 및 서류 제출에 어려움을 느껴 세무대리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국세청이 기계학습을 통한 인공지능을 국세청 홈택스에 결합하여 조세 신고의 절차 등을

53) 중소기업중앙회, 『2021년 조세 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21, 29~31면.

54) 중소기업중앙회, 위의 논문, 35~39면.

간소화 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세법 규정의 복잡성과 어려움 때문에 세무대리인에 대한 의존 가능성은 상존(尙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납세자들이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 전문가 도움을 받지 않아도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비대면 납세 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이에 대해 국세청은 올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향후 예산을 확보해 기존의 국세청 홈택스를 지능형 홈택스로 전면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⁵⁵⁾ 그런데 과연 납세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단순히 국세청 홈택스에 기계학습을 통한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조세의 신고 절차를 간편화 하였다고 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일까? 즉, 현재의 국세청 홈택스로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납세자가 직접 조세를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인공지능을 결합한 지능형 홈택스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납세자가 스스로 조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들의 기본적인 세법 지식 등에 기인한 것이지 국세청 홈택스의 복잡한 신고 절차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없는 납세자의 직접 신고는 복잡한 세제의 간편화·간소화라는 절차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후에 신고절차의 간편성을 논의하여야 하는데,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기존의 복잡한 세법 규정들은 그대로 둔 채 단지 인공지능을 통해 신고 절차만을 간소화 한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 스스로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세의 신고를 직접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셋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디지털 혁신은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세금을 신속·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비대면 납세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서 인공지능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대화형 홈택스 구축·모바일 확대·맞춤형 도움 서비스를 역점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⁵⁶⁾ 즉, 세무서의 방문 없는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의 신고 등을 납세자가 직접 모바일 등을 통해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업자의 조세신고는 대부분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고를 이용하는데, 2020년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비율은 94.9%이다. 이러한 비율로만 보면 전자신고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자도 적지 않다. 주로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을 선임할 여력이 없는 영세·신규 사업자나 디지털 소외계층인 고령자가 대부분이다. 현재 세무서에서 이들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신고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55) 박영석, “국세청, 차세대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세무상담 서비스 도입”, <https://www.nbntv.co.kr/news/>(검색일 : 2023.04.13.).

56)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앞의 논문, 1면.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국민 참여 예산제도에 따라 2019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세법 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는 세무서 안내창구에 배치된 직원(외부인력)을 통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의 홈택스 전자 신고 방법 등을 안내(또는 교육) 받을 수 있다. 현재 수도권 48개(서울은 전역) 세무서에서 운영 중인 상태다. 국세청은 이 사업으로 취약계층이 세무서에 다시 방문하지 않고 스스로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다. 전자신고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는 부분도 사업의 필요성으로 거론된다. 실제 국세상담센터에 들어온 국세청 홈택스 관련 전화문의는 255만건(2020년)에 이른다.⁵⁷⁾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학습 및 챗GPT를 활용한 인공지능을 국세청 홈택스에 결합하여 세무대리인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각 지대의 납세자를 위해 조세의 신고 및 상담을 간편하고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즉, 모든 납세자들이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 그들이 직접 조세의 신고 등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특정 납세자 군으로서 영세 사업자 및 신규 사업자들의 전자신고에 대한 편리성을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를 두고 마치 모든 납세자들이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 납세자가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를 개편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너무 과장되고 계획적인 주장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결국, 국세청 홈택스에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고도화하는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조세의 신고를 대행하고 있는 납세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조세의 신고는 정확성과 결부 되어 있는데, 신고의 정확성은 가산세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 신고로서 종합소득세 등 대부분의 세목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하여야 하는 신고주의 세목이 대부분이다. 즉, 납세의무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를 통해 확정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이 아무리 국세청 홈택스에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그들의 조세 신고 절차를 간편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과세권자 스스로가 납세자의 조세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납세자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 국세청 홈택스로 그들의 신고를 무결점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아마도 전 세계에서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 국세청 홈택스는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나의 플랫폼을 제시해 준 것이지 그들의 신고에 대한 정확성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납세자의 조세신고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 및 납세자에 대한 조세의 신고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인공지능을 결합한 국세청 홈택스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모든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로**

57) 강상엽,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3년째... '예산깎일라' 첫 검증”, <https://www.payzon.co.kr/pzNews> (검색일 : 2023.04.13.).

자가 신고를 한다면 국세청은 신고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오류·탈루 등에 대한 검토와 수정신고 등에 대한 각종 납세협력의무의 이행에 대해 납세자와 직접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세무행정은 마비가 될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세무대리인의 존재 이유이다. 과세권자와 세무 대리인은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과 보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국세청은 1966.03.03. 재무부의 외청으로 발족하였는데, 그 이후 세금신고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홈택스의 탄생이다. 도입 당시 홈택스 서비스가 불편하고 어려워 세무대리인도 그 서비스를 기피하였는데, 국세청은 세무대리인들에게 사용실적을 요구하고 확인하면서 점점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실적이 증가함으로써 조세 행정의 시간과 비용 그리고 업무효율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조세의 신고는 1980년대에 수기로 하던 것을 1990년 중반 전산의 발달로 전산매체로 신고를 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전자신고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⁵⁸⁾ 이렇듯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지금의 국세청 홈택스는 탄생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인공지능과 결합하여 고도화 하더라도 세무대리인을 배제하고 모든 납세자가 조세의 신고를 직접 하지는 못할 것인데, 그 이유는 납세자 측면에서는 신고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과세권자는 납세자의 자가 신고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조세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결국, 기존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조세의 신고를 위임한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가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고도화되더라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기존에 세무대리인을 활용할 수 없는 영세 납세자 등은 여전히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자가 신고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국세청 홈택스의 고도화로 이들의 조세 신고는 간편하고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주장한 “전문가 도움이 필요 없는 누구나 쉽고 편리한 홈택스로 개편 추진”은 “세무대리인을 활용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 등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홈택스로 개편 추진”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섯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국세청은 조세의 상담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챗GPT로 상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납세자에게 세무 상담을 제공해 주겠다고 하였다. 챗GPT를 활용한 세무상담은 기존의 인터넷 상담 및 서면상담과 다르게 납세자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대화형으로 질문을 하면 챗GPT를 활용한 인공지능이 답변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완성되어 실현된다면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조세 상담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판단된다. 챗GPT는 자연어 처리에 기반한 인공지능으로서 조세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까지 기계

58) 정성모 외 2인, 위의 논문, 202면.

학습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의 기계학습은 기존에 나와 있는 텍스트화 된 문서가 그 대상으로서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생성한 질의·응답 자료, 조세심판원 등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자료, 대법원 등 법원의 판결 자료, 관련 세법 규정 등일 것이다.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인공지능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학습하여 납세자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그 답변을 어느 정도의 정확성으로 제공해 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즉, 국세청이 제공해 준다는 인공지능 상담은 챗GPT를 통한 자연어 처리 능력과 기계학습을 통해 조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서 인간과 다르게 인공지능이 대량의 자료를 학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가치판단이나 사실 판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납세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거나 기존의 인터넷 상담 및 서면 상담과 마찬가지로 “사실 판단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챗GPT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것이 아니므로 그 자체가 여러 가지의 단점과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⁵⁹⁾

〈표 8〉 챗GPT의 문제점 및 단점

구분	내용
편향성(Bias)	챗GPT는 학습 데이터에 따라 편향되는 경향이 있는데, 과세관청에 유리한 해석에 대한 데이터로 학습을 많이 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국고 주의적 편향성에 빠질 수 있다.
일반화 능력	챗GPT는 학습 데이터 내에서만 성능이 우수하므로 조세심판원 등의 결정 및 법원의 판결이 새롭게 나오면 그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여 객관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대화의 지속성	조세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 등에 대한 복잡한 사안을 세법 규정과 기존 해석 및 각종 판례 등을 토대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가 조세에 관한 질문에서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듣기 위해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질문하는데, 챗GPT는 대화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가독성	챗GPT는 생성된 문장이 어색하거나 이상한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거짓말	챗GPT는 그럴듯한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잘 한다. 챗GPT의 답변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실이 아닐 경우도 많다. 또한, 챗GPT의

59) 문형남, “챗GPT 교육에 활용하려면 단점과 문제점 이해해야”, <https://news.unn.net/news/>(검색일 : 2023.04.14.).

구분	내용
	답변은 항상 같지 않은데, 같은 질문이라 하더라도 질문 시점 마다 매번 답이 다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챗GPT의 답변이 항상 옳은가 인데, 그렇지 않고 틀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결국, 챗GPT에 대한 답변을 한번 더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빅데이터 활용	챗GPT는 많은 데이터로 학습을 했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도 많으므로 잘못된 답변을 유발할 수 있다.
판단 능력	챗GPT는 주관적 판단.객관적 판단.윤리적 판단.사실적 판단 등 판단을 하지 않는다. 학습한 정보를 기반으로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하는 것이다.

※ 출처 : 문형남, “챗GPT 교육에 활용하려면 단점과 문제점 이해해야”, <https://news.unn.net/news/> (검색일 : 2023.04.14.)에서 제시된 내용을 일정 부분 수정해서 표로 정리한 것임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챗GPT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완전무결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과 단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이 아닌 이상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세청이 시행하고자 하는 챗GPT를 활용한 세무 상담에 대한 답변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공신력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납세자가 챗GPT를 활용한 세무 상담에서 어떠한 사실관계에서 과세 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추후 과세권자가 그 답변을 배제하고 과세를 했을 때 국세청의 공적 책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챗GPT 등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상담시스템을 고도화해 납세자에게 맞춤형 세무 상담을 제공할겠다는 다소 선부른 계획만 성급하게 발표 하였는데, 그 인공지능의 답변에 대해 과세권자가 어느 정도의 공적 판단과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빠져 있는 상태이다.⁶⁰⁾ 현재 인터넷 상담 및 서면상담에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는 점⁶¹⁾을 감안하면 챗GPT를 활용한 인공지능의 상담에 대해서도 공신력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챗GPT를 활용한 인공지능의 세무 상담은 기존의 인터넷 상담 및 서면상담보다 답변이 빠르고 검색의 불편함을 해소한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60) 최성근, “챗GPT 기반 세무 서비스 ‘주목’ . . . ‘AI 기반 답변, 공적 판단 충돌 가능성’”, <http://www.sisajournal-e.com/news>(검색일 : 2023.04.13.).

61) 조세심판원 결정(조세심판원 2018.11.27. 선고 2018서1005 결정 등)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에 따르면 국세상담센터의 세법상담 답변내용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로서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개별사례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견해를 표명하는 절차로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 『국세상담센터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2019, 15면).

이다. 이로써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납세자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회계장부 및 세무조정을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점, 국세청 홈택스에 인공지능을 결합한 고도화는 조세의 신고 편의를 위한 것이지 세법 등 세제 자체가 간단해 진 것은 아니라는 점, 국세청 홈택스의 고도화는 모든 납세자가 아니라 세무대리인을 활용할 수 없는 영세 납세자 등 일부를 위한 것이라는 점, 조세 신고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가산세 문제, 챗GPT를 활용한 조세 상담에 대한 과세권자의 공적 책임 문제 등을 감안하면 국세청 홈택스에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고도화 하더라도 일정부분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전문가 도움이 필요 없는 누구나 쉽고 편리한 홈택스로 개편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서 기존의 홈택스에서 지능형 홈택스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의 조세신고 및 조세 상담에 편리성을 줄 수 있을지 언정 기존에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을 활용하여 조세의 신고 등을 하던 것을 납세자의 자가 신고로 전면적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어쩌면 과세권자 입장에서 납세자에 대한 조세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해 준다는 것은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당연하고 환영할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고도화 하더라도 일정 부분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 오히려 기계학습을 통한 플랫폼 형태의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조세의 신고에 대한 불법 세무대리와 아래에서 살펴볼 챗GPT를 활용한 조세의 상담 및 조세의 불복에 대해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다. 챗GPT를 활용한 불법 세무 대리의 남용 가능성

(1) 챗GPT의 남용 가능성

인공지능 세무대리 프로그램으로서 플랫폼이 제공하는 세무 대리는 대리권이 존재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을 앞세워 현행 제도를 형식적으로 회피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불법 세무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인공지능 세무대리 프로그램은 기계학습을 통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불법 세무대리로서 조세의 신고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향후에는 챗GPT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불법 세무대리가 난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바로 조세의 상담과 조세의 불복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인공지능의 기계학습 및 자연어 처리 기술의 발달에 기인한 것으로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플랫폼을 통해 인공지능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직접 조세에 대한 상담을 하고 조세 불복을 대행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인공지능을 통한 불법 세무대리가 기존의 조세에 대한 신고에서 조세의 상담과 조세 불복의

대행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플랫폼에서 챗GPT를 활용한 조세의 상담은 이미 자비스앤 빌런즈가 운영하는 삼쩜삼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2023.02.27.에 발표한 챗GPT를 기반으로 한 세금 챗봇 “AI 점삼이”이다. AI 점삼이는 “알리GPT”⁶²⁾가 활용되었는데, 삼쩜삼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고 연말정산과 관련된 질문에 즉시 맞춤형 답변을 제공한다. 삼쩜삼은 앞으로 연말정산을 포함한 다양한 세금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⁶³⁾ 챗GPT를 활용한 조세의 상담 사례는 현재까지 삼쩜삼을 통해 제공되는 AI 점삼이가 유일한 것으로 보이지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계학습을 통한 인공지능 플랫폼에서 조세의 신고에 대한 불법 세무대리가 급격히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마찬가지로 챗GPT를 활용한 조세의 상담에 대한 불법 세무대리도 추후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조세불복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가 있다.⁶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는데, 납세자가 조세불복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제수단이다.⁶⁵⁾ 심판청구 절차는 과세권자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후 처분청의 답변 내용에 대한 반박 및 자신의 주장을 보완하는 항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심판청구서 및 항변서는 주로 서면으로 제출하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서면을 챗GPT를 활용한 인공지능 플랫폼에서 직접 작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챗GPT를 활용한 인공지능이 조세불복 절차에서 제출하는 심판청구서 등 서면을 직접 작성한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추후 챗GPT를 고도화 하여 한국형 챗GPT가 도입된다면 챗GPT를 활용한 인공지능이 심판청구서 등 조세불복 절차에서 제출하는 서면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조세불복에 대한 불법

62) 알리GPT는 자연어 인지검색 솔루션 기업 올거나이즈가 만든 AI 솔루션으로서 기업의 문서와 매뉴얼 및 최신 정보를 업로드하면 질문에 대한 답을 문서에서 찾아 요약 및 종합해 답하고 그 출처 문서까지 보여준다. 올거나이즈 자체 AI 챗봇 알리에 챗GPT 기반 모델 GPT-3.5를 결합했다.

63) 이주영, “삼쩜삼, GPT 결합한 세금 챗봇 ‘AI 점삼이’ 공개...연말정산 답변 서비스”, [https://www.aitimes.com/news/\(2023.04.14.\)](https://www.aitimes.com/news/(2023.04.14.)).

64) 백혜영·강선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불복제도의 개선방안연구”, 『경영경제연구』 제40권 제2호,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18, 104면.

65) 조세불복 청구 건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심사청구가 555건이고 심판청구가 15,845건으로서 심사청구에 비해 심판청구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이동식, “조세전문법원의 도입가능성 검토”, 『세무와 회계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소, 2022, 16~17면).

세무대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챗GPT를 활용한 인공지능이 조세 상담에 대한 불법 세무대리를 하고 있는 사례는 현재까지 위에서 살펴본 AI 점삼이가 유일하지만 앞으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조세상담 및 조세불복은 아니지만 법률상담 및 법률대리를 인공지능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 해외 사례 등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인공지능의 법률상담 등에 대한 해외 사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2) 챗GPT를 활용한 법률서비스 등 사례⁶⁶⁾

① 법률상담 챗봇 두낫페이

인공지능 변호사를 표방하고 각광 받고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로 두낫페이(DoNotPay)가 있다. 이 서비스는 2015년 조슈아 브라우더(Joshua Browder)라는 대학생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개발되었다. 실제 뉴욕, 런던 등에서 서비스를 시작했고 21개월 동안 25만 건을 상담해 이 가운데 16만 건의 주차위반 과태료 처분이 취소됐다. 이는 약 64%가 뒤집힌 것으로 약 400만 달러(46억원)의 과태료가 취소된 것이다.

현재 이 서비스는 주차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법률적 대응뿐만 아니라, 소액심판 등 다양한 영역으로까지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는 비교적 단순한 법률 업무에 대해 개인 이용자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 제공 방식은 소위 말하는 챗봇 형식의 편의적인 수단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이 챗봇을 통해 관련 사항들을 요건에 맞게 상담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차위반 통지서 등을 이미지화 하여 전송하기도 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실제 법률 관련 사안들의 유형화 및 관련 문서의 학습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이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법률 텍스트의 분석 및 분류, 그리고 학습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② 법률 인공지능 로스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와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 IBM사의 슈퍼컴퓨터

66) 이하의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업무의 인공지능(AI) 도입 가능성 연구 - 입법조사회 답을 중심으로 -』, 2019, 109~113면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왓슨(Watson)을 기반으로 한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이다.

로스 인텔리전스의 강점은 어디까지나 자연어 처리능력과 방대한 판례 정보의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어분류(Natural Language classification)-대화-STT(Speech to Text)-TTS(Text to Speech) API와 음성인식(Voice Recognition), 그리고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술을 총화하여 이러한 장점을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로스 인텔리전스가 단순한 법률 데이터베이스 수준을 넘어서서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로 분류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문제시 되는 사안과 관련성이 높은 판례와 법령을 찾아내고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순차적으로 문제 사안에 대해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 결과를 바탕으로 ‘검색’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어 처리 및 법률 용어와의 상관성 등이 활용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사례에 가장 부합하는(우선순위) 정보들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분석에서는 종래 축적 및 학습된 판례 정보, 그리고 기존 변호사들의 답변 및 대응 패턴 등을 활용한다.

③ 입법 예측 서비스 피스컬노트

최근 직접적으로 입법 및 규제와 관련하여 각광받고 있는 서비스로는 피스컬노트(FiscalNote)라는 서비스가 존재한다. 피스컬노트는 2013년 탄생한 서비스로 미국의 모든 주의 법안 및 법령들을 추적 및 분석하고, 이에 따른 입법 예측 결과를 제공한다.

통상적인 입법 관련 정보는 미국 의회 공식사이트(Congress.gov)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민간의 공개의회(OpenCongress.org) 및 거브트랙(GovTrack.us) 사이트를 통해서도 보다 동적인 법안 정보의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피스컬노트는 이보다는 더욱 분석에 집중된 입법 예측 결과의 제시라는 점에서 특화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반 공공기관 및 사기업 등의 규제 대응 업무(로비 및 신규입법 등)의 부담을 감축시켜주는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회 및 입법기관들의 제반 의안 정보들을 데이터 셋으로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자연어 처리와 사용되는 용어 및 문장 간의 상관관계를 머신러닝 등의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서비스는 미국 내 존재하는 개별 주에서의 입법과정상의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하여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과거 법안 심의 등에 관한 정보를 기반으로 향후의 상황을 예측한다는 특수성도 가지고 있다

(3) 챗GPT를 활용한 조세 상담의 가능성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세의 상담 및 자문도 세무 대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세무대리인 이외의 자가 조세의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 세무대리에 해당한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온라인상에서 세무 대리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임에도 인터넷 부동산카페 “부동산스터디”, “부동산 투자&절세달인” 등지에서 인터넷 카페 이용자들에게 자신에게 세무 상담을 받으라는 홍보성 쪽지를 대량으로 전송하고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한 대가로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카페 회원들에게 246만원의 대가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증거자료를 수취하여 그 자의 불법 세무대리 행위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여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하였다.⁶⁷⁾ 이렇게 현재까지는 세무대리인이 아닌 자가 조세상담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조세상담 및 자문에 대한 불법 세무대리의 대부분이었지만 앞으로는 기계학습을 통한 인공지능이 플랫폼 형태로 조세의 신고라는 불법 세무대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챗GPT를 활용한 인공지능이 납세자의 편리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플랫폼 형태로 조세의 상담에 대한 불법 세무대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⁶⁸⁾

2023.02.14. 아사히신문은 일본의 변호사 닛컴이 운영하는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로서 “모두의 법률상담”을 통해 챗GPT를 활용한 신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변호사 닛컴이 축적한 100만여 건의 법률 상담 사례를 인공지능에 가르쳐 늦어도 2023년 2분기 중 신규 법률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를 활용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로서 챗GPT에 일본의 법률과 과거 판례를 학습시킨 뒤 일반인들이 묻는 말에 답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변호사 자격증이 없이 돈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금지되어 있어 챗GPT를 활용한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변호사 닛컴은 앞으로 법률상담 외에도 의사의 진료 상담, 세무사의 세금 상담 같은 영역에도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을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⁶⁹⁾

일본의 변호사 닛컴은 해당 닛컴의 법률 Q&A 코너에 질문을 남기면 변호사가 무료로 답을

67) 세무사 신문, “세무사회, 무자격자 제보 포상으로 불법 세무대리 뿌리 뽑는다”, <https://webzine.kacpta.or.kr/news/>(검색일 : 2023.04.15.). 특히 자신의 ‘국세청 조사반장’ 출신이라며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까다로운 세무상담을 1000건 이상 수행했다는 등 주위를 현혹시켜 세무대리 사장을 어지럽히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세무사를 불신하게 했다.

68) 이미 자비스앤빌런즈가 챗GPT를 활용하여 삼짍삼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세무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조세상담으로 그 범위를 넓혀갈 가능성이 크다.

69) 성호철, “日, 이르면 4월 챗GPT 활용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시작”,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japan/>(검색일 : 2023.04.15.).

해주는 것으로서 월 330엔(약 3,200원)을 내고 프리미엄 회원이 되면 다른 사람의 사례 203만 건까지 모두 볼 수 있게 하였다. 실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단계에선 가장 성실하게 답을 내놓은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 변호사 업계는 극심한 레드오션으로 인해 수입이 어려운 변호사가 연봉 300만 엔에 그치는 변호사도 적지 않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 닷کم은 고객 유치의 중요한 통로가 됨으로써 일본의 변호사들에게 해당 닷کم은 일종의 구세주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변호사는 월 2만 엔의 회비를 내면 검색 때 상위에 표시되고 자신의 해결 사례까지 내보일 수 있어 현재 변호사 닷کم에 가입한 변호사 수는 21,031명으로서 일본 전체 변호사의 절반에 육박한다. 즉, 대형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와 기업에 고용된 변호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용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일본의 변호사 닷کم은 초창기 적자였지만 설립 후 9년째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2012년부터는 뉴스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14년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는데, 2021년엔 매출액 53억1800만 엔 및 영업이익 1억7200만 엔의 실적을 올렸다.⁷⁰⁾

일본의 변호사 닷کم 수입의 대부분은 변호사가 지급하는 광고비이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변호사 닷کم과 유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로톡이 있는데, 현재 로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로앤컴퍼니는 과거 두 차례 검찰의 변호사법 위반 고발 관련 불기소 결정⁷¹⁾과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정부 관련 부처의 합법성 인정 발언 등에 힘입어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치에 다양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⁷²⁾

세무사 업계에서도 일본의 변호사 닷کم 및 로톡과 마찬가지로 광고비 형태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납세자와 세무사를 연결하는 세무사 매칭 플랫폼이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⁷³⁾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인공지능의 기계학습과 챗GPT를 활용하여 조세의 상담 및 자

70) 박형준, “벤고시닷کم vs 로톡”, <https://www.donga.com/news/>(검색일 : 2023.04.16.).

71) 2015년에는 서울지방법변호사회가 로톡을 고발하였으나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2016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을 포함한 플랫폼 4개 업체를 고발하였으나 마찬가지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72) 로톡은 「변호사 윤리 장전」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변호사협회의 징계 예고 등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로톡은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변호사협회가 광고 플랫폼에 변호사의 단순 가입만으로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인 동시에 표시광고법상의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는데(나지원, “리걸테크(legal tech) 발달과 법조윤리의 대응 - 플랫폼에 의한 변호사광고를 중심으로 -”, 『아주법학』 제15권 제2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42~43면),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법변호사회가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 플랫폼 이용 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 원을 부과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법변호사회에 각각 10억 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박효정, “로톡 쓰면 징계’라던 변호사단체, 법정 최고 과징금 20억 철회 ”<https://www.sedaily.com/NewsView/>(검색일 : 2023.04.16.).

73) 세무사 매칭 플랫폼의 종류는 다양하다. '세무통', '세무사를 부탁해', '세무앤', '세무사매칭센터', '함

문을 무료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으로서 조세의 무료 상담 관련 플랫폼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들 플랫폼은 조세의 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으면 세무사법 위반으로 제재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조세의 상담을 의뢰한 납세자와 세무사들을 연결해 주면서 그 대가로 세무사들로부터 광고비 형태의 회비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일본의 변호사 닛컴이 무료 법률상담을 하면서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회비를 받으면서 변호사법 위반을 회피한 사례나 우리나라의 로톡과 같이 의뢰인과 변호사를 매칭시켜주면서 그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회비를 받아 변호사법 위반을 피해간 사례에서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결국, 기존의 사람 중심의 세무대리 시장에서 앞으로는 기계학습 및 챗GPT를 활용한 인공지능이라는 플랫폼 세무 대리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인공지능의 출현으로서 그 인공지능의 기계학습 및 심층 학습과 더불어 챗GPT라는 유용한 수단이 등장하면서 더욱더 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4) 챗GPT를 활용한 조세 불복의 가능성

미국의 주차위반 과태료는 운전자들에겐 불친절한 주변 주차 환경 탓에 실제로 애매한 주차위반 표시나 표지판 페인트가 벗겨진 곳에서 교통 법규 위반으로 배송되는 과태료 고지서가 수없이 많다. 이러한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 미국 운전자들은 소송을 생각해 보지만 변호사의 선임 비용 부담으로 생각을 접는다고 한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 없이 손쉽게 불복 신청을 접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분위기인데, 소송 서류 작성과 변론 등에 유용한 인공지능(AI) 기반의 변호사가 현실 법정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공개 변론에 나선 AI 변호사를 실제로 만나보게 될 조짐을 보인 것이다. 바로 AI 변호사 응용소프트웨어(앱)인 두넛페이(DoNotPay) 챗봇 서비스를 교통 법규 위반 안건으로 열릴 오프라인 법정에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미국 내 한 도시 법정에 나설 교통 법규 위반 피고에게 두넛페이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인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AI 변호사 앱의 첫 현실 법정 등판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⁷⁴⁾ 그

께해요 세무' 등 군소 플랫폼들이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단체 기장 할인·법무사 수수료 무료·기장 무료 이벤트 등의 방식으로 홍보에 나선다. 세목별 세무사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도 있다. '텍스다운'은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안내문 유형에 따라 정찰제로 제후 세무사를 연결해 준다. 종류가 많다 보니 이용자는 세무사를 찾기도 전에 먼저 플랫폼끼리 비교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시장이 커지는 이유는 기존의 '깜깜이 방식'으로 세무사를 찾는 것이 불만이었던 납세자들에게 가격·서비스 측면에서 편의를 주기 때문이다. 별점과 후기로 서비스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점도 매력으로 작용한다(박혜진, “커지는 세무대리 플랫폼 시장…납세자·세무사에 어떤 영향 미칠까?”, <http://www.taxtimes.co.kr>(검색일 : 2023.04.16.).

74) 허재경, “수면 위로 떠오른 인공지능(AI) 변호사, 법정 등판 논란”, <https://m.hankookilbo.com/News>

러나 이러한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두넛페이는 AI 변호사가 법정에서 과속 위반 딱지 사건을 변호할 계획에 대해 관할 지방의 변호사협회로부터 기소 위협을 받고 변론을 포기하였기 때문이다.⁷⁵⁾ 이는 미국의 사례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른바 나홀로소송⁷⁶⁾에서 챗GPT를 활용한 인공지능 플랫폼이 소장작성, 답변서 작성 등을 대신해 주면서 그 플랫폼 회사가 광고비 형태의 수익을 창출하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조세의 불복에서도 챗GPT를 활용한 인공지능 플랫폼이 청구서 작성 및 항변서 작성 등을 직접 해주고 그 대가를 직접적으로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대리인 등으로부터 광고비 형태로 받음으로써 불법 세무 대리의 위험성을 회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청구서를 작성하여 조세심판원에 제출하고 처분청의 답변을 받은 후에 항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서 주로 서면에 의해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챗GPT를 활용한 인공지능 플랫폼이 조세 불복 청구인에게 청구서 및 항변서 작성 등을 직접 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는 불복청구인에게 유리한 결정문 및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IV. 개선방안

1. 해석론적 개선방안

세무사회는 기계학습을 통한 인공지능 플랫폼으로서 조세의 신고에 대한 불법 세무 대리를 하고 있는 삼짍삼과 자비스 세무대행을 2021.03.26.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는데, 수사기관은 2022.08.16.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⁷⁷⁾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이의신

(검색일 : 2023.04.16.).

75) 박찬, “AI 변호사, 변호사 협회 구속 위협에 변호 포기”, <https://www.aitimes.com/news/>(검색일 : 2023.04.16.).

76) 나홀로소송 비율은 최근 6년간(2015년~2020년 6월)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고와 피고 가운데 한쪽만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93.1%로 높아진다(최재서, “민사소송 72.6%가 변호사 없는 '나홀로소송'”, <https://www.yna.co.kr/view>(검색일 : 2023.04.16.).

77) 세무사신문, “한국세무사회, 강남경찰서의 '삼짍삼' 불송치 결정에 유감, 이의신청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것”,

청은 불송치 결정을 한 수사기관을 통해 검찰에 전달되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조사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는 해당 사건을 검토한 후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⁷⁸⁾ 인공지능이 기계학습을 통해 삼쩜삼과 자비스라는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조세의 신고는 기존에 사무장 중심의 불법 세무 대리에서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전환된 것으로서 그 인공지능 플랫폼의 배후에 있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직접 불법 세무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다면 그 자체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플랫폼의 형태로 제공되는 불법 세무 대리는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수사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 결과가 기소로 결정되더라도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는 장시간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인공지능의 플랫폼이 행하는 불법 세무 대리에 대한 세무사법의 입법 미비로 인해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자비스앤빌런즈와 같이 인공지능과 플랫폼을 결합한 불법 세무대리 업체들은 우후죽순으로 생겨 날 것이다. 따라서 기계학습 및 심층 학습과 챗 GPT를 활용한 불법 세무 대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법을 개정하는 입법론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2. 입법론적 개선방안

현행 세무사법은 주로 사무장 등 사람에 의한 불법 세무 대리에 대한 처벌 규정 위주로 규정되어 있는데, 기계학습과 챗GPT를 활용한 인공지능 플랫폼이 납세자의 편의 제고라는 명목으로 조세의 신고·조세의 상담·조세의 불복 대행 등의 불법 세무 대리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세무사법을 <표 9>와 같이 개정하는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⁷⁹⁾

3. 세무사회의 자구 노력

해석론적 및 입법론적 개선은 대법원 확정판결과 국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일정 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는 반면 세무사회의 자구 노력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개선을

<https://m.webzine.kacpta.or.kr/news/>(검색일 : 2023.04.16.).

78) 서희열, “삼쩜삼 수사와 경찰 능력의 한계”, <https://www.tfmedia.co.kr/mobile/>(검색일 : 2023.04.16.).

79) 한국조세정책학회, 앞의 논문, 141면.

〈표 9〉 세무사법 개정안

법 조문	개정안
세무사법 제2조의2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	누구든지(<u>「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제2조 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⁸⁰⁾을 개발한 자 및 그 인공지능기술을 포함한다</u>)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세무사법 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세무사는 다른 사람(<u>「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제2조 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을 포함한다</u>)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u>「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제2조 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을 포함한다</u>) 세무사로부터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u>「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제2조 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을 포함한다</u>)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세무사법 제2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u>「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제2조 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을 개발하여 그 인공지능기술로 세무대리를 하게 한 자를 포함한다</u>)

이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조세의 신고 및 조세의 상담 등에 대한 불법 세무 대리가 기존 사람 중심의 아날로그에서 기계학습 및 심층 학습과 챗GPT를 결합한 인공지능 플랫폼 형태의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세무사회의 자구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추후 인공지능이 플랫폼을 통해 조세의 신고 및 조세의 상담 등에 대한 불법 세무 대리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직접 받으면 세무사법 위반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해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 으로부터 광고비 형태의 회비를 받아 세무사법 위반 혐의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세무사회는 다음과 같은 자구 노력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80) 2023.03.1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법안소위에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해당 법안의 제2조 제3호는 인공지능기술을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 기술 또는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일련의 소프트웨어 기술이나 그 기술들로 만들어진 기반기술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무사법에 별도로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면 된다.

첫째, 세무사회의 조직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세무사회의 사무처는 1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업무 침해 감시 등 불법 세무 대리과 관련한 업무는 “감리정화조사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해당 팀의 구성원은 6명으로서 그마저도 업무정화와 업무 침해 등 불법 세무 대리과 관련된 업무는 2명의 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체제는 기존에 사무장 등 사람 중심의 불법 세무 대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기계학습 및 챗GPT를 활용한 인공지능의 불법 세무 대리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자비스앤빌런즈의 불법 세무 대리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등을 통해 이미 경험하였다. 일본의 변호사 닛컴, 미국의 두넛페이 등, 우리나라의 로톡은 모두 리걸테크⁸¹⁾로서 법률 지식과 기술을 결합한 것이다. 변호사에게 독점적으로 제공되던 법률상담 등을 인공지능을 통한 플랫폼에서 제공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회원(변호사)들 한테광고비 형태로 간접적으로 수취하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자비스앤빌런즈가 제공하는 삼점삼 및 자비스세무대행은 리걸테크를 축소한 것으로서 “텍스테크”로 해석할 수도 있다. 세법도 넓은 의미에서 법률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리걸테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변호사가 조세와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고 주로 세무대리인으로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에 제공되는 점을 고려하면 리걸테크 보다 축소된 텍스테크라는 용어가 적절해 보인다. 즉, 삼점삼 등을 포함한 <표 3>의 인공지능 세무대리 플랫폼은 택스(Tax)와 기술(technology) 결합한 텍스테크(Taxtechnology)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텍스테크라는 용어에서 보듯이 이들의 불법 세무대리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지식의 함양과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터넷 기술에 대한 지식과 인공지능의 불법 세무 대리에 대한 세무사법 적용에 대한 해석 등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여진다. 즉, 변호사와 인공지능 전문가를 채용하여 인공지능의 불법 세무 대리에 대한 고발 등에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서 세무사회에 “법무팀”을 신설하여 관련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필요성은 이미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점삼 사례에서 충분히 경험 하였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다. 그런데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 말로 소를 모두 잃어버릴 수 있는 큰

81) 리걸테크(Legaltech)란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산업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리걸테크란 본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일컫는 용어였으나, 최근 들어 IT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과 산업을 아우르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즉, 리걸테크는 쉽게 말해 ICT를 활용해 의뢰인의 변호사 검색, 상담 신청이나, 법조인의 법령 검색, 업무 처리 등을 도와주는 기술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현대경제연구원, 리걸테크(Legaltech) 산업 현황과 시사점, 2016, 1면).

일로 변질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현재의 세무사들의 상황이고 이를 해결하여야 할 주체와 능력이 세무사회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세무사회는 인공지능의 불법 세무대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팀으로서 법무팀 신설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둘째, 대국민 서비스의 강화이다. 삼점삼은 그동안 과세 사각 지대에 있던 배달 등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 영세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적정한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⁸²⁾ 즉, 프리랜서·아르바이트·플랫폼노동자 등 사업소득자는 수입금액을 받을 때 3.3%로 원천징수 당하는데,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보다 작아 그 환급금을 신고해 주는 것이 삼점삼 서비스의 핵심이다. 어쩌면 플랫폼 노동자 등 영세 납세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 일수도 있다. 그러나 서비스의 무료제공이 아니라 환급금의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받는 점을 감안하면 삼점삼이라는 불법 세무 대리를 통해 자비스앤빌런즈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고 서비스 이용자는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세무리스크를 고스란히 본인이 떠안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결국 삼점삼은 세무대리인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과세권자의 무관심으로 인해 단기간에 급성장한 인공지능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세무대리인들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인데, 일정 부분 영리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세무대리인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히 그들의 세금 신고 등 세무대리를 외면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는 것은 세무사회가 비영리 공익목적으로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삼점삼과 같은 쉽고 빠른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함으로써 세무사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자체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무사회의 전산능력 강화이다. 일본의 변호사 닛컴, 미국의 두넛페이 등, 우리나라의 로톡과 같이 조세의 상담 및 조세의 불복 등 세무 대리도 인공지능을 결합한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라는 구호 아래 향후 우후죽순(雨後竹筍)으로 생겨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플랫폼은 납세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무료제공을 표방하면서 세무사 등으로부터 광고비 형태의 사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리걸테크 및 텍스트크가 모두 이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문제는 세무대리인이 인공지능이라는 플랫폼에 종속되거나

82) 자비스앤빌런즈는 AI 경리 ‘자비스’에 이어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플랫폼노동자 등 사업소득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을 원스톱으로 도와주는 ‘삼점삼’을 잇따라 선보이며 업계에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 왔다. 회사는 특히 삼점삼 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전통 세무회계 시장에서 소외되어 온 소액 개인세무 시장에 주목해 나갈 계획이다(버섯돌이, “‘삼점삼’ 대박 난 ‘자비스앤빌런즈’, 전 분야에 걸쳐 인재 채용”, <https://wowtale.net/2020/12/04/19245/>(검색일 : 2023.04.17.).

지배당하는 세상이 올 수 있는 것이다. 텍스트크 등을 이용하는 자들에게 세무대리인으로서 자신을 노출 빈도나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많은 금액의 광고비를 지출할 것이고, 인공지능 플랫폼은 세무대리인의 광고비·별점·후기 등을 토대로 상단에 노출하거나 노출빈도를 높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쿠팡, 배민 등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상품을 공급자하는 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사항이다. 결국, 세무대리인 등이 자신의 노출 빈도나 플랫폼 상단에 노출시키기 위해 더 많은 광고비를 지불하고 저가 수입 및 댓글 조작과 상대방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자신이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불법·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⁸³⁾ 즉, 실력있고 능력있는 세무대리인이 소비자에게 채택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알고리즘을 파악하여 댓글 조작 등을 통해 악의적이고 편법적인 세무대리인에게 세무대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성실한 세무대리인 및 세무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납세자 등 모두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이다. 세무대리 시장의 혼탁으로 인해 저가 수입 등 정상적인 세무대리인이 퇴출되고 편법에 능한 세무대리인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이다.⁸⁴⁾ 또한, 세무사 등에 대한 어려운 시험 통과가 없어도 무료 세무대리 앱을 개발하면서 광고비 형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아마도 굳이 어렵게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 자격을 획득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혁신으로 포장된 인공지능 플랫폼에 대한 세무 대리에 대해 일정 수준의 제제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한 텍스트크로 인해 혼탁한 세무대리 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세무사회에서 텍스트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하여 청년 세무사 또는 개업 초기 세무사들한테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플랫폼에 지배되는 상황을 막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혼탁한 세무대리 시장을 막음으로써 세무사회의 선제적인 텍스트크의 제공으로 후발로 진입하는 텍스트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세무사회의 전산솔루션사업팀을 확대하든지 또는 인공지능 플랫폼만을 개발·관리·운영하는 별도의 전산팀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83) 쿠팡이 유통계의 공룡으로 자리잡으면서 거대한 몸집을 움직일 때마다 적지 않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새롭게 떠오른 문제는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에 대한 리뷰 조작 의혹이다. 쿠팡은 “상품평 99.9%는 구매 고객이 작성한 것으로, 직원이 작성한 상품평의 경우 이를 따로 표시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이 이미 지난달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리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쿠팡 본사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마친 상태다(신소윤, “리뷰조작 의혹 쿠팡, 심판이 선수로 나서 반칙까지 하는 격”, <https://www.hani.co.kr/arti/society/>(검색일 : 2023.04.17.).

84) 그레샴의 법칙은 실생활에서 “나쁜 것이 좋은 것의 자리를 빼앗는다”는 관용적 의미로도 쓰인다.

V. 결론

인공지능의 불법 세무 대리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는 기계학습 및 심층 학습을 통한 인공지능이 플랫폼 형태로 제공되는 조세의 신고 등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챗GPT를 활용한 조세의 상담 및 조세의 불복 대리에 대한 불법 세무대리라 할 수 있다.

기계학습을 통한 인공지능 플랫폼으로서 삼쩜삼 및 자비스 세무대행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플랫폼은 일부 극 소수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운영하는 불법 세무대리 업체이다. 또한, 챗GPT의 출현으로 기존의 세무대리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국세청은 “전문가 도움이 필요 없는 누구나 쉽고 편리한 홈택스로 개편 추진”을 실현한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이는 마치 모든 납세자의 조세의 신고를 세무대리인이 없이도 납세자 스스로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두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가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납세자들의 자가신고로 인한 조세행정이 마비될 수 있고 현행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감안하면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챗GPT를 활용한 국세청의 대국민 서비스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보다는 일본의 변호사 닷컴 및 우리나라의 로톡 등과 같은 텍스트크의 등장으로 세무대리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기존 세무대리인이 플랫폼에 지배·종속되는 것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기계학습과 챗GPT를 활용하여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불법 세무대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석론적으로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세무대리의 불법성을 대법원 판결로 확정하는 방안과 인공지능의 불법 세무대리에 대한 제재를 세무사법에 직접 규율하는 입법론적 개선방안이 있다. 이 두가지 개선방안은 일정 부분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세무사회 자체적으로 법무팀 및 전산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텍스트크의 난발에 대비하고 삼쩜삼과 같이 영세 납세자들을 위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국민의 세무사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토 론 문

인공지능(AI)의 불법세무대리에 대한 고찰 챗GPT 등

| 정진오 세무사(광고세무법인 전북지점) |

1. 인공지능 등 불법 세무대리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세무대리는 납세자와의 세무 관련 사무처리의 위임계약에 따라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조세에 관한 신고 업무의 대행, 세무조사 등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무대리업무는 세무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세무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세무대리행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삼쩜삼 등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일정한 자격 없이 불법적인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확대되는 추세로 건전한 세무질서를 훼손하고 조세의 공평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납세자와 삼쩜삼 운영업자와 세무대리 수입동의 절차의 적법성 검토

납세자가 세무사에게 일정한 세무대리를 위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서식에 의한 위임계약과 일정한 절차에 의한 수입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삼쩜삼 운영자도 홈택스를 통한 형식적인 수입동의 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형식상으로는 정상적인 세무대리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동의를 받은 후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납세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환급세액 계산 등 세무대리인의 업무인 신고대행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와 관련하여 지급명세서 등 필요한 자료는 이른바 파트너 세무사의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수립하고 활용하였습니다.

즉, 삼쩜삼은 납세자와 파트너 세무사의 홈택스 아이디를 이용하는 수법으로 합법적으로 세무대리를 수행한 것으로 가장하였습니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불법세무대리를 세무자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의 지휘·감독 없이 납세자를 대신하거나 사실상 신고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세무지식의 이용이 필요한 신고 등을 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5.28. 선고 2015도8490 판결 참조).

이 판례에 비추어 보면 삼쩜삼의 셀프환급 신청 서비스 등 세무대리행위는 불법세무대리에 해당한다는 발표자의 주장에 찬성합니다.

3. 자비스의 신고 관련 업무 대행

자비스의 세무대행 누적 회원수가 56,889개라는 점을 들어 두명의 파트너 세무사가 그 회원을 모두 관리 감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장부작성과 조세의 신고 서비스는 자비스라는 인공지능 플랫폼이 수행하고 파트너는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세무대행 행위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자와 장소 등을 수사과정에서 확인하였다면 파트너 세무사의 명의대여 혐의가 명백한데,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무사 협회 차원에서도 정황 증거보다 구체적인 명의대여 혐의를 철저히 파악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입법론적 개선방안 관련

삼썸삼 사건에서는 세무사 직무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부수업무를 수행하면서 합법적인 세무대리를 하는 것처럼 납세자 등을 현혹하여 변칙적으로 세무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한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의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발표자의 개선방안외에 세무자의 직무에 ‘세무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홈텍스 처리 관련 전산지원 대행’을 신설하여 등록된 세무사와 납세자 본인을 제외한 타인은 납세자의 홈텍스에 화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홈텍스의 권한을 일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5. 대국민 서비스 강화

삼썸삼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는 소득이 연중 계속하여 일정하게 발생하지 않고 근로자 등을 고용하지 않고 소득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매월 일정한 금액의 기장료를 지급하고 세무대리를 위임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를 틈새시장으로 보고 불법적인 세무대리를 벌인 것을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무사 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세무사회가 비영리 공익목적으로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삼썸삼과 같은 쉽고 빠른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하여 무료로 공급하는 방안은 매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세무사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사무실 인력난이 심한 상황에서 낮은 수수료를 받고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세무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차리리 업무를 특화시켜 ‘인적용역자 소득세 신고업무 대행 전담 세무사’등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납세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된 전문 세무사 등을 선정하고 선정된 세무사 등에게만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술적인 부문 개선과 동시에 환급신고대행 서비스 등 기장 또는 신고 업무의 부수 업무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에게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납세자들에게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과세관청에서도 일정한 금액의 환급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거나 공인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도록 각종 신고안내 시 홍보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세무사회간의 업무협약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님의 의견은 어떠하진지요?

토 론 문

인공지능(AI)의 불법세무대리에 대한 고찰 챗GPT 등

| 한정미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 인공지능을 통한 세무대리 업무 일반 검토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 정의는 기술, 과학 분야를 비롯한 인문, 사회분야까지 널리 연구되었으며, 법학 분야에서도 많은 논문과 연구보고서에서 소개된 바 있음

한 예로 한희원 교수의 논문에서는 “인공지능이 무엇이라는 질문은 인공(人工)과 지능(知能)이라는 두 가지 의문으로 구성된다. 인공이란 사람이 만든다는 의미이다. 지능에 대한 대답은 쉽지 않다. 인간의 지능이 의식이나 무의식, 심리, 자유의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을 갖춘 기계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인공지능은 지능형 에이전트, 지능형로봇, 로봇 등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으로 설명¹⁾

인공지능의 개념만큼이나 많은 연구가 진행된 쟁점으로 인공지능의 법인격 문제가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의 법인격에 대해서도 여전히 정립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임

1) 한희원, “인공지능(AI)의 법인격 주체 가능성의 이론적 기틀에 대한 기초 연구”, 중앙법학 제20집 제3호, 2018. 9, 378면.

법적으로는 인공지능 자체의 법인격을 인정하는 입법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수준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논의와 민사분야, 형사분야를 구분해야 한다는 논의 등 다양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없으나,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포함한 법률 규정은 「행정기본법」, 「향로표지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산업, 과학 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행정기본법」 제20조²⁾에서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자동적 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행정의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을 통한 업무처리를 인정하는 근거가 포함되었다는 의미를 가짐

한편, 세무분야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의 도입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임

박훈 교수의 논문 “4차산업혁명을 고려한 세정 및 세제의 개선방안”에서 “세금도 세법에 따른 과세라 할 때 법률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시키는 논의와 관련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³⁾하면서 “인공지능은 납세자, 세무대리인, 과세관청 모두에게 납세협력비용 감소와 납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세무대리인 차원에서 대응방안도 논의가 필요함.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놓고 다툼이 있거나 있었지만, 세무서비스의 국경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들 직역간 대립 및 경쟁만이 아니라 협력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⁴⁾을 언급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국세청의 홈텍스 서비스와 같이 세무서비스를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처리하는 수준을 인공지능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이 경우는 여전히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통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 것일 뿐, 그 프로그램을 통한 행정처리의 법적 의무와 책임은 행정청(국세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인공지능에 대해 자동화된 프로그램 수준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별도의 법인격으로 인정하여 스스로 학습·판단하는 경우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을 통한 세무대리 등 세무업무의 처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음

인공지능을 통한 세무대리는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해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 인공지능의 수준은 어느 정도로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전제되는 것임

2) 「행정기본법」 제20조(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박 훈, “4차산업혁명을 고려한 세정 및 세제의 개선방안”, 세무와 법 제13권제1호, 2020. 6. 30, 104면.

4) 박 훈, 위의 논문, 118면.

여기에 대해서 앞서 설명한 「행정기본법」의 예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통한 행정청의 자동처분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여전히 그 행정처분의 권한이나 책임은 ‘행정청’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보수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법률유보 원칙 하에서 인공지능에게는 여전히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기속행위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인공지능의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앞으로 세무대리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서비스(로봇 서비스를 포함)를 통한 다양한 업무의 처리 특히, 행정처리 분야에 있어서 법적인 쟁점이 발생할 것이고 그 책임이나 권한에 대한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의 법 체계 하에서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사용은 법인격을 가진 처분권자가 사용하는 효율적인 ‘수단’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삼점삼 프로그램을 통한 불법 세무대리 관련 검토

발표문에서는 삼점삼 프로그램을 통한 세무대리를 인공지능을 통한 불법 세무대리로 설명하고 각 쟁점을 검토하였음

그러나 현재 삼점삼의 사례는 인공지능이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사항이 아니라 세무사의 명의대여가 있었는지 여부와 불법적인 세무대리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사항이 되었을 뿐임

발표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같이 인공지능기술을 개발한 자 및 그 인공지능기술에 대해 명의대여나 세무대리의 소개·알선을 금지하는 것은 인공지능기술을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앞서 설명한 법인격 인정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추가적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에서와 같이 “인공지능기술을 개발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할 경우 개발자와 인공지능기술을 사용하여 사업을 한 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가 다수 있을 것이므로 당초 입법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자동화된 프로그램”과 “인공지능”의 구분, 법인격 부여 여부는 여전히 법적인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세무사법」의 대응 논의 역시 필요한 시점

만일 삼점삼 프로그램을 통해 세무사에 의한 업무처리가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에서의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업무의 수행은 「세무사법」제2조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요

다만, 이전의 ‘타다’사례나 ‘직방’사례 등을 보면, 지역 보호를 위한 규제의 사례는 긍정적·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우며, 소비자의 동의를 얻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무사와 납세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시스템(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갖추어 세무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기존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한 삼점삼 사례에 대한 의견은 아래와 같음

○ 세무사법 제2조의2 위반 관련

자비스앤빌런즈는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으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아니며, 홈페이지에도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였으며, 파트너 변호사를 통해 업무를 처리함을 밝히고 있음

「세무사법」 제2조의2에서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이 건의 경우 2021. 11. 23 해당 조문이 신설된 이후에는 영업 방식을 변경하여 모집·상담·안내 등을 세무법인인 ‘스타밸류’를 통해 모두 처리하였고, 스타밸류를 통해 자비스앤빌런즈는 서버임대료 등 수수료만을 수령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이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세무사법」제2조의2를 위반함이 없게 됨

즉, 이와 같은 영업방식의 변화를 통해 자비스앤빌런즈는 법률상 중개, 소개, 알선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인정될 것이며,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제공은 그것이 인 공지능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게 됨

○ 세무사법 제12조의3 위반 관련

또한, 피의자 000의 주장대로 세무사인 본인이 명의대여를 하여 「세무사법」제12조의3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세무법인 스타밸류를 통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처리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조사결과에 따라 이것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명의대여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인 “①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세무사로부터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해당함이 없게 될 것임

○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 관련

피의자 000이 홈페이지 광고에 게시한 광고 문구에 관하여 「표시광고법」 제3조의 부당한 표시·광고 인지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즉, 고발인의 주장에 따른 광고의 소비자 오인 가능성은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였음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시행령의 기준을 보면 일부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

이와 관련하여 아래 판례의 판시사항에 근거하여 보면, 위 조문의 제2항의 사실의 은폐·축소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고, 제1항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건으로 다투어 보아야 할 것인데, 자비스앤빌런즈의 광고가 일반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만큼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것에 해당할 것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조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 2. 제11조(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9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2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의2(제2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 2. 이 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로서 제6조 또는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 3. 제12조의3제1항(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4. 제12조의3제2항(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린 자 5. 제12조의3제3항(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 이하 생략

제 2 주 제

조세법원의 설립 필요성과 향후 과제

| 주제 발표자 | 차 현 숙 본부장
(한국법제연구원)

제 2 주 제

조세법원의 설립 필요성과 향후 과제

| 차현숙 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

I. 조세법원의 설립 필요성

국민의 권익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조세법원의 도입 필요성이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다.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정부는 2008년 국세심판원을 조세심판원으로 확대·개편하였으나, 조세소송절차에 있어서는 아직도 일반법원인 행정법원이 이를 담당하고 있어 그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할 것이며, 별도의 조세전문 법원을 설치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 개선 방향이 2010년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서 제기된 바 있다.¹⁾

거슬러 올라가보면, 1969년 1월 31일자²⁾ 중앙일보에서 “조세법원의 신설제의”라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신민당은 30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 세무관서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세심판법안과 이에 따르는 법원조직법개정안,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세심사청구법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세심판은 3심제로 하되 1심으로는 독립된 조세전담법원을 두도록 했는데 서울

1) 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 조세구제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미국식 조세법원 도입의 검토가 필요. 2010. 12. 20. 1면

2) <https://www.joongang.co.kr/article/print/1186681>(최종접속일:2022.10.24.)

과 경기도를 관할하는 조세법원을 곧 서울에 두고 다른 지역에서는 조세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조세심판부를 두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세법원의 설치에 대한 논의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반복되어 왔다고 할 것이다.

가장 최근의 논의로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2023년 상반기 조세분야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연구를 통해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 행정소송법상 조세소송 및 해외 주요국의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비교·분석해 조세전문법원 도입 필요 여부, 조세불복제도 통합 등 개편방안을 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³⁾ 이러한 논의는 실제 조세 불복절차의 1심 역할을 하는 조세심판원은 급증하는 심판청구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심판청구 처리 기간도 지나치게 길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행정심 단계(필요적 전치주의)의 조세불복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국세청 심사청구 등 3갈래로 나뉘어서 운영되고 있으나 유독 납세자들의 발걸음은 심판원으로 쏠리고 있다. 조세소송은 시간(1~3심 평균 4년)과 투입되는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한 과세처분을 행정심 단계에서 빠르게 해결해주어야 한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⁴⁾

청구건수와 관련하여 2012년 6000여건이던 연간 청구건수는 2019년 8000여건, 2020년에는 1만 3000여건 가까이 증가했다.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력을 늘리고 새로운 일처리 방식도 도입했다. 한해 사건처리건수를 1만 2000여건까지 끌어 올렸음에도 2017년 1600여건, 2019년 3000여건, 2021년에는 4400여건…。 밀려오는 청구로 다음 해로 넘어가는 누적 사건들도 많아졌다. 납세자들은 사건처리가 지연되면서 생업에 지장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⁵⁾ 조세심판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심판관 1인이 1518건을 처리했고, 조사관은 715건, 서기관/사무관은 196건을 처리했다. 연간 심판청구는 국세 기준 1만6588건으로, 이 중 1만2147건을 처리했다. 10건 중 7.3건만 처리되는 셈이며, 청구기간과 관련해서는 2021년 평균 처리 일수는 60일 이내 279건(2.3%), 90일 이내 3870건(31.9%), 180일 이내 2445건(20.1%), 180일 초과 5553건(45.7%)으로 2건 중 1건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기준 평균 처리 일수는 196일로, 2017년의 평균 157일보다 39일 늘어났다.

3) 내일신문, “국회입법조사처, 조세전문법원 도입 필요성 검토”, 2023.3.21.기사, https://m.naeil.com/m_news_view.php?id_art=454970(최종접속일:2023.4.10.)

4) 조세일보, '조세심판관' 더 늘릴 때?…국회입법처, 필요성 따져본다, 2023.3.21.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3/03/20230321481459.html>(최종접속일:2023.4.13.)

5) 조세금융신문, [초대석]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심판청구 최대 가치는 ‘신속’...길어지면 기업·개인 고통 커져”, 2023.2.5. 기사<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39683>(최종접속일:2023.4.10.)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정하게 돼 있지만 현실은 90일의 두 배는 기다려야 결정서를 받아볼 수 있다.⁶⁾ 최종결정권자인 상임심판관(8명)이 처리한 건수는 한 명당 1,518건에 달한다. '인력 증원' 없인 권리구제 지연은 해결하기 힘든 숙제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⁷⁾

이와 같은 조세불복절차의 처리건수 증가와 평균 처리 일수 지연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현실적 어려움에 더하여 오늘날처럼 사회가 급변하고 경제 분야가 복잡하고 전문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회현상을 규율해야 하는 법원도 전문화를 해야만 법원재판의 대국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⁸⁾는 점에서 조세법원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세불복제도와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어서 주요국가의 조세법원에 대해서 소개한 후 우리나라에의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이후 조세법원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를 간략히 살펴보고 글을 마치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의 조세불복제도와 문제점

1. 조세불복제도

조세불복제도는 납세자가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조세불복은 세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점으로 90일 내에 제기해야 한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결정이 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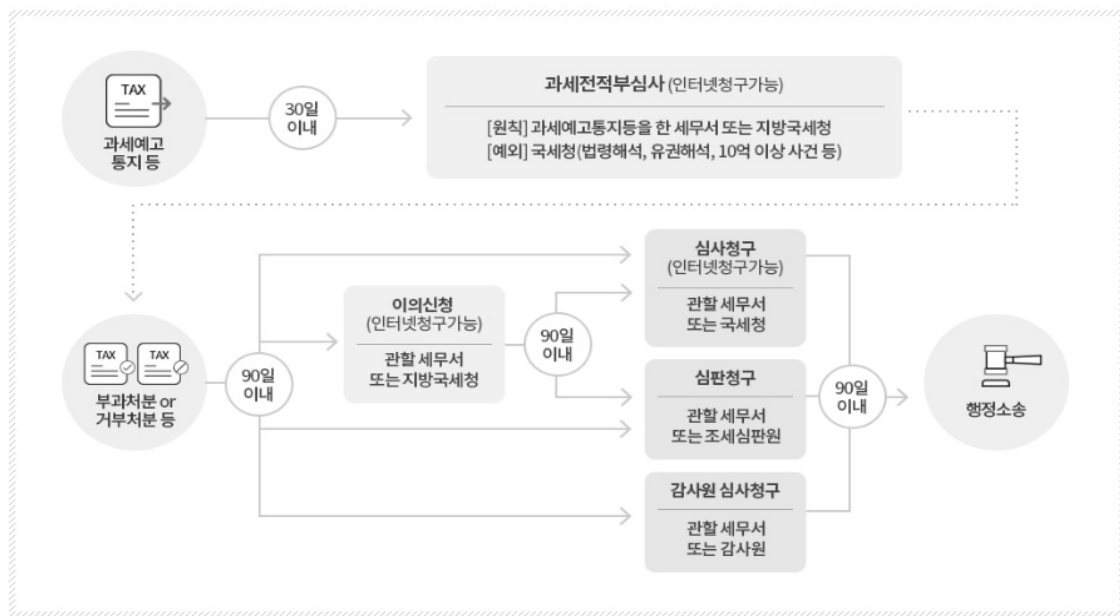
6) 내일신문, “국회입법조사처, 조세전문법원 도입 필요성 검토”, 2023.3.21. 기사, https://m.naeil.com/m_news_view.php?id_art=454970(최종접속일:2023.4.10.)

7) 조세일보, '조세심판관' 더 늘릴 때?…국회입법처, 필요성 따져본다, 2023.3.21.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3/03/20230321481459.html>(최종접속일:2023.4.13.)

8) 세정일보, [포럼] “조세법 전문 법관이 담당하는 ‘조세전문법원’ 도입해 전문성 높여야”, 2022.4.22.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7291>(최종접속일:2023.4.10.)

납부고지서를 받기 이전에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부과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의 구제방법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청구 절차는 아래 그림⁹⁾과 같다.



조세불복제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납세자와 과세권자 간의 갈등에 대해 판단해 줄 중립적 판단기관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관이 행정기관인 경우와 법원인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¹⁰⁾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심판원을 두어 조세불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행정기관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1) 조세심판원¹¹⁾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상 불복 절차의 하나인 심판 청구를 심리하고 결정하는 기관.

9) 납세자권익24,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0&cntntsId=8298(최종접속일:2023.4.13.)

10) 이동식, 조세전문법원의 도입가능성 검토,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0호, 2022, 8면

11)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https://www.tt.go.kr/mUser/guide/systemList.do>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세 처분청인 국세청이나 관세청과 분리하여 독립된 제3의 기관이다.

1974년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심사청구제도와 별도로 과세관청 으로부터 독립된 국세 심판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국세심판소의 설립과 기능에 관한 규정을 두는 「국세기본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심판청구사건의 증가에 따라 1991년, 1994년, 1998년, 2008년, 2019년, 2020년 심판부 또는 조사관실이 증설되어 현재 8개 심판부, 15개 조사실로 운영되고 있다.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인 30일(지방세는 90일)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와는 달리 심판결정에는 "심판관의 독립성 보장", "준사법적 심판절차"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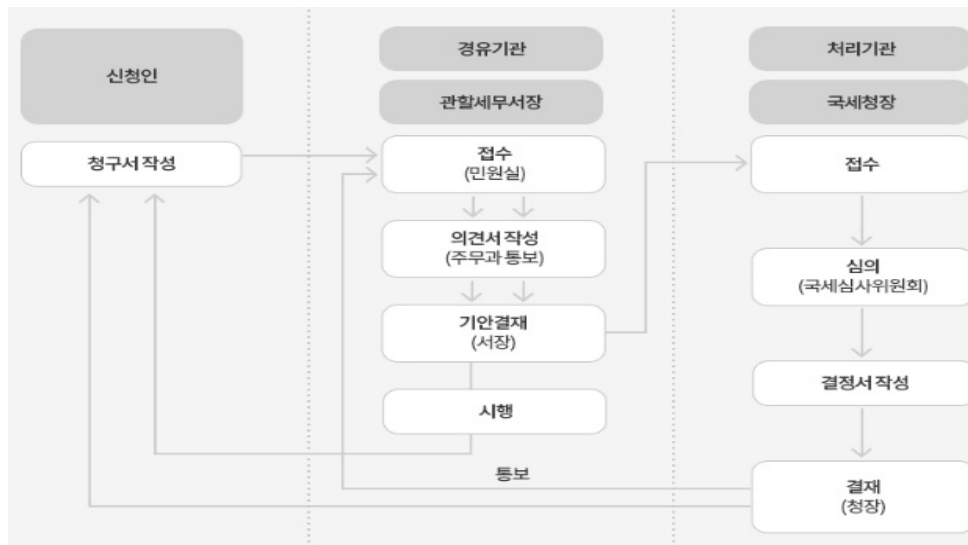
(2) 국세청 심사청구

심사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를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당해 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청장에게 하는 '사후'권리구제 제도이다.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한다.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불복청구기한은 불변기한으로 기한을 넘기면 각하결정이 내려진다.

심사청구는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민간인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하여 심사청구를 한 날부터 90일내에 청구인과 세무서에 통지한다. 심사청구절차는 아래 그림¹²⁾과 같다.

12) 납세자권익24,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817&cntntsId=8353(최종접속일:2023.4.13.)



(3)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과 국세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감사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말한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잉 대한 결정내용은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력이 없어야 가능하다.

2. 현행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

(1) 단계별 조세불복제도 운영의 실효성

우리나라의 조세불복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국세청 심사청구제도, 감사원 심사청구제도, 조세심판원 심판제도 등 다양한 조세불복절차는 납세자에게 불복청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조세심판 청구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조세불복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제도 취지가 무색하다고 할 것이다.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감사원의 인용률¹³⁾은 다른 절차(20~27%)에 비해 매우 낮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처리율을 보면, 국세심사 77.98%, 조세심판 76.70%, 감사원 59.36%로

13) 감사원의 인용율은 2015년 11.7%, 2016년 17.1%, 2017년 4.6%, 2018년 1.7%, 2019년 14.2%이다. 김무열, 국세행정불복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각주 71)

감사원이 가장 낮은 처리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¹⁴⁾

또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각기 다른 기관에서 중복 수행하는 것으로서 조세행정에 있어서 비경제성 또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하며,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정으로 인해 납세의무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행정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며, 서로 간의 경쟁에 의하여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이 인위적으로 인용율을 높이기 위해 졸속한 판단을 한다면 납세의무자의 공정한 심판받을 권리에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다.¹⁵⁾

(2) 사전적 제도로서의 과세전적부심사 운영과 심사의 중복성 여부

과세전적부심사를 수행하는 재결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다.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재결기관이 된다는 점에서 재결 자체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독립된 재결기관을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¹⁶⁾ 반면에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전에 사전적으로 자기시정의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후 구제절차와는 결이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과세처분이 있는 후에 이루어지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있으며, 이 절차와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간의 조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¹⁷⁾ 특히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재결청이 심사를 한다는 것은 중복성으로 인해 절차의 복잡성만 야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¹⁸⁾ 그러한 점에서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이의신청제도¹⁹⁾와의 적절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4) 김무열, 앞의 책, 82면.

15) 길용원, 조세불복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서강법률논총 제3권제2호, 2014, 18면.

16) 박종수, 「현행 조세법상 납세자이익보호 및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9권 제2호, 2012, 96면. 김무열, 앞의 책에서 재인용.

17) 김무열, 앞의 책, 90면.

18) 길용원, 조세불복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서강법률논총 제3권제2호, 2014, 16면.

19) 이의신청제도는 임의적 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와 결정기관이 동일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하여 사전에 같은 내용의 판단을 하여 과세관청은 자기반성의 기회가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문제가 된다. 길용원, 앞의 글, 16면.

(3) 처리기한의 현실화 문제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의 처리기한은 모두 90일 또는 3개월 이내에 처리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제외하고는 90일 기한이 지켜진 사례는 없었다. 각 제도의 처리기한 90일(또는 3개월)을 영국의 사례²⁰⁾와 같이 단순사안과 보통 또는 복잡한 사안으로 구분하여 사안별로 처리기한을 달리 적용하거나, 현실적인 처리기한을 참고하여 6개월로 개정 혹은 현재의 90일을 그대로 두고 45일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면 1차적으로 중간 진행경과를 통보하고 90일이 경과하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통보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²¹⁾

(4) 심판원의 재심 문제

조세심판원에서 심판관들이 결정한 사항을 심판원 행정실에서 뒤집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재심'에 대한 사유를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제한적으로 정해 뒀지만, 이 같은 법령이 아무렇지 않게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심은 조세심판원장의 결재가 필요하지만, 말 그대로 심판원장은 결재 권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무는 주로 행정실 조정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²²⁾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 사유는 ①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했거나 사실관계의 판단이나 법령해석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②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근거 법령이나 심리내용과 관련된 다른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령에 대한 해석으로서 종전의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획재정부장관의 질의회신이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에서 이루어진 해석과 다른 경우, ③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 법령이나 사실관계에 관하여 종전의 법원 판결 또는 조세심판원 결정과 다른 해석을 하거나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한 경우이다.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재심 건수는 2014년 473건, 2015년 390건, 2016년 221건,

20) 백해영·강선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불복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경영경제연구, 제40권 제2호, 2018, 122면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에 청구된 사건은 분류작업을 통해 단순사안은 1개월, 보통 또는 복잡한 사안에 대하여는 2개월의 처리기한을 두고 있다”고 한다.

21) 백해영·강선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불복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경영경제연구, 제40권 제2호, 2018, 128면.

22) 조세일보, “납세자 괴롭히기?...심판관 결정 뒤집는 심판원”, 2022.5.31.기사,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2/05/20220531456411.html>(최종접속일:2023.4.23.)

2017년 209건, 2018년 211건, 2019년 116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었다. 반면, 장기미결사건 현황은 2018년 1.7%에서 2019년 2.5%, 2020년 2.4%, 2021년 4.2%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²³⁾ 이와 같은 행정실의 재심의로 억울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Ⅲ. 주요 국가의 조세법원 · 조세소송 관련 현황

1. 미국

(1) 미국의 조세불복제도

미국의 조세는 크게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되며 내국세에 대한 조세불복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나라의 심판청구와 같은 필요적 절차는 없고 임의적 절차로서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협의하는 절차가 발달되어 있으며 조세소송은 1심이나 납세자의 법원 선택권이 폭넓게 주어진다는 점이다. 협의제도로 조정, 중재, 조기협의제도 등이 있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조세분쟁의 연평균 85% 이상을 합의로 해결하고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소송이 막대한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필요로 하여 설사 이긴다하더라도 실익이 거의 없는 것도 협의제도가 발달하게 되는 데 한 몫 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정은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협의하여 제3의 조정자를 선정하고 조정자는 이들에게 대화와 합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들이 조정안에 동의를 하면 협의를 종료되며 조정안에 대한 구속력은 없어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 중재는 조정과 유사하나 중재자의 중재결정에 구속력이 있어 반드시 따라야 한다.²⁴⁾

(2) 미국 조세법원제도²⁵⁾

미국의 조세법원은 조세법률 관계에 정통한 전문지식을 갖춘 법관들로 구성된 특수법원으

23) 조세일보, “납세자 괴롭히기?..심판관 결정 뒤집는 심판원”, 2022.5.31.기사,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2/05/20220531456411.html>(최종접속일:2023.4.23.)

24) 백혜영·강선아, 앞의 글, 120면.

25) 황진영, 미국 조세법원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0. 26~27면.

로서, 연방조세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 D.C. 한 군데에만 위치한 이 법원은 이 곳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순회재판을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조세소송을 담당하기 위해 조세법원(U.S. Tax Court) .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 연방청구법원(U.S. Court of Federal Claims)의 3가지 법원을 두고 있는데, 납세자가 당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법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choice of forum). 그 선택은 대체로 소송기간 . 재판의 장소 . 법관의 구성 . 배심원 . 선례구속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토대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법원을 선택하게 된다.

미국 조세법원은 미국 연방헌법(U.S. Constitution) 제1장에 근거하여 의회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그 전신은 1924년 설립된 조세심판소(U.S. Board of Tax Appeal, BTA)이다. 조세심판소는 행정부의 독립기관으로 워싱턴 D.C.에 위치하였으며, 그 지부는 연방 내의 어느 곳에서도 심판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 심판소의 개소로 인해 납세자는 문제가 되는 사건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관련 심판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지금까지도 조세법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후 제도 개선에 관련된 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1969년에는 입법상의 법원으로 사법적(司法的) 지위를 부여 받게 되었으며, 명칭도 “조세법원(Tax Court)”로 개칭하여 완전한 사법기관의 형태인 지금의 모습으로 개편되었다.

미국 조세법원의 경우 기일소환제도(Calnedar Call)를 두어 기일지정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고 있다는 점도 특색인데, ‘당사자’ 위주로 기일이 지정된다는 점에서 ‘재판부’에 의해 기일지정이 주도되는 우리나라 소송제도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저소득납세자지원센터(LITC)’를 두어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 법률지원을 해주고 있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2. 캐나다

(1) 조세법원 도입 배경

캐나다의 경우 조세법원은 조세심사위원회(the Tax Review Board)의 연장선상에서 캐나다 조세법원법(the Tax Court of Canada Act)에 따라 1983년 설립되었다.

(2) 캐나다 조세법원의 성격

캐나다 조세법원의 경우 캐나다 국세청 및 캐나다 정부의 다른 모든 부서로부터 독립된 법원이며, 영어와 프랑스어의 2개 언어를 사용하는 고등법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인과 기업(법인)은 법원이 독점적인 관할권을 갖는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캐나다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제기한다. 조세법원에 대한 항소의 대부분은 연방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IT)와 소비세법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세(GST)와 관련이 있는 사건이다.

(3) 당사자

캐나다 조세법원에서 당사자는 캐나다 국세청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무부 변호사 뿐만 아니라 개인, 회계사, 개인 및 기업의 변호사 등이 포함된다. 조세법원의 일반절차(General Procedure)에 따라 항소하는 경우 스스로 대리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대리할 수 있음. 법인의 경우 변호사가 대리하여야 한다.

(4) 재판의 공개

캐나다 조세법원의 모든 재판 및 판결은 공개되며, 비밀유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한 누구나 이에 접근할 수 있다.

(5) 절차

조세법원에 항소하기 전에 국세청에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90일 이내에 조세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3. 프랑스

(1) 프랑스 조세제도의 특징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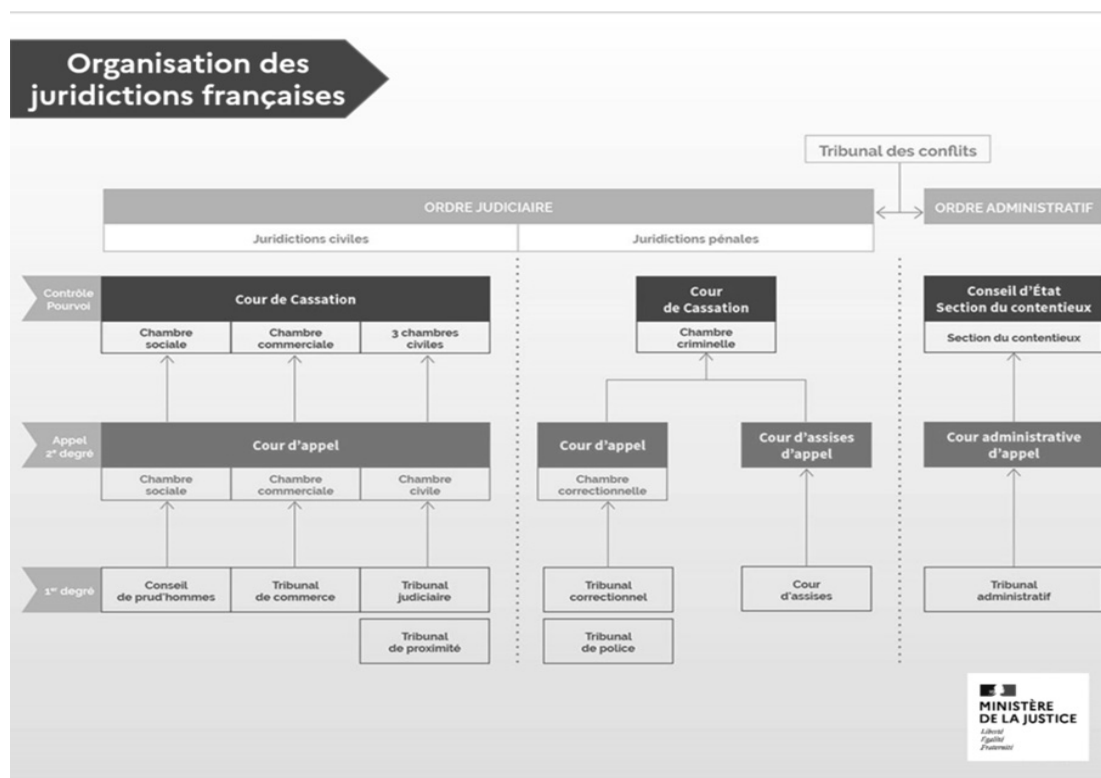
26) 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제도-프랑스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305면; 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제도-프랑스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410면-415면

프랑스 조세제도는 납세자는 선하다는 담론이 바탕이 된 세제이다. 대부분의 경우, 납세자에게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제출의무가 부여된다. 납세자가 불성실하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실(bonne foi)하다는 추정을 받는다. 아울러 납부세액은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서 등의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는 증거가 없는 한 정확한 것으로 추정(présomption d'exactitude)을 받아서 거기에 따르고, 추후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해 확정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부과제척기간의 계산, 조세쟁송에 관련된 입증책임의 분배 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납세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이다. 납세자가 평가를 하여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고자 하는 경우 입증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2) 프랑스 법원조직 상 조세 담당법원

프랑스의 법원조직은 아래 그림과 같다.²⁷⁾



27) <http://www.justice.gouv.fr/organisation-de-la-justice-10031/>. 2023. 04. 15. 방문.

프랑스의 법원조직은 민사 및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일반재판권과 행정재판권이 구분되는 2원적 조직을 특징으로 한다.²⁸⁾ 일반재판권에 대한 최종심은 파기원(Cour de cassation)이, 행정재판권에 대한 최종심은 국사원(또는 최고행정법원, Conseil d'État)²⁹⁾이 담당한다.³⁰⁾

조세와 관련하여 살펴보자면, 조세의 종류에 따라 담당하는 법원이 다르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조세절차에 관한 법전’(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제L.199조에 따르면, 직접세(법인세, 지방세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조세소송은 지방행정법원(tribunal administratif)이 관할하며, 등록세(droits d'enregistrement), 부동산세(impôt sur la fortune immobilière), 토지공시세(taxe de publicité foncière), 인지세(droits de timbre), 간접세(contributions indirectes) 등과 관련된 조세소송은 1심 지방법원(tribunal judiciaire)³¹⁾이 담당한다.³²⁾

따라서 지방행정법원(tribunal administratif)이 담당한 조세소송은 행정항소법원(cours administratives d'appel)을 거쳐, 국사원(또는 최고행정법원, Conseil d'État)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며, 1심 지방법원(tribunal judiciaire)이 담당한 조세소송은 항소법원(Cour d'appel)을 거쳐, 파기원(Cour de cassation)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지방행정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납세자뿐만 아니라 과세관청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과 지방행정법원 단계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지만, 고등법원 이상의 소송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된다.

(3) 소송대리

프랑스의 경우 조세불복과 관련하여 별도의 조세법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2원적인 법원조직을 특징으로 하는 프랑스의 법원조직에 근거하여, 조세의 종류에 따라서 지방행정법원(tribunal administratif) 또는 1심 지방법원(tribunal judiciaire)이 조세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조세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주고 있으며, 고등법원 이상의 소송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통상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일단 진다.

28) 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제도-프랑스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410면-415면

29) 프랑스의 국사원은 행정소송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역할 이외에, 정부제출법률안 및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해당하는 조직법률(loi organique)에 대한 사전적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함.

30) <http://www.justice.gouv.fr/organisation-de-la-justice-10031/>. 2023. 04. 15. 방문.

31) 종래의 ‘민사합의부 재판소’(Tribunal de grande instance)는 관련법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1심 지방법원’(tribunal judiciaire)으로 변경되었음.

32)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article_lc/LEGIARTI000039278599, 2023. 04. 15. 방문.

4. 독일

(1) 독일 조세법원

독일의 조세 및 재정에 관한 재판관할권(Finanzgerichtsbarkeit)은 행정관청으로 독립된 특별 행정법원에 의하여 행사되는데(§1 FGO), 재정재판관할권을 가진 법원에는 주 고등법원으로서의 조세법원(Finanzgericht)과 연방차원의 연방조세법원(Bundesfinanzhof, BFH)이 있다. 연방조세법원(BFH)은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나 연방법무부(BMJ)의 감독을 받는다.

독일 조세법원은 기본법(Grundgesetz) 제95조제1항³³⁾에 근거하며³⁴⁾, 조세소송에 대하여는 조세법원법(Finanzgerichtsordnung, FGO)에 규정되어 있다(§33 FGO).³⁵⁾

조세소송(Finanzrechtsweg)은 연방과 각 주를 통하여 통일적인 조세재판권(Finanzgerichtsbarkeit)을 가진 조세법원(Finanzgericht)과 그 상소심으로서 연방최고법원인 연방조세법원(Bundesfinanzhof)이 이를 관할함으로써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35 FGO · §36 FGO).

조세법원의 조직이나 심리절차에 관한 사항은 조세법원법(FGO)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 중 연방법이 아닌 주법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규율되어지는 조세에 대한 행정소송은 조세법원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라 일반 행정소송법(Verwaltungsgerichtsordnung, VwGO)이 적용되며, 이러한 경우 소송절차는 3심제로 운영된다.

연방조세법원(BFH)은 각 세법이 합헌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세법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절차를 중지하고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독일기본법 제100조제1항).

33) 독일기본법 제95조제1항: 독일 연방조세법원(BFH)는 독일연방공화국 5대 최고재판소 중 하나이다.

34)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Art 95

(1) Für die Gebiete der ordentlichen, der Verwaltungs-, der Finanz-, der Arbeits- und der Sozialgerichtsbarkeit errichtet der Bund als oberste Gerichtshöfe den Bundesgerichtshof, das Bundesverwaltungsgericht, den Bundesfinanzhof, das Bundesarbeitsgericht und das Bundessozialgericht.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95조

(1) 연방은 일반, 행정, 재정, 노동 및 사회 관할 분야에 대해 연방대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조세법원, 연방노동법원 및 연방사회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둔다.

35) 독일 연방조세법원(Bundesfinanzhof), <https://www.bundesfinanzhof.de/de/gericht/aufgaben/oester-gerichtshof-des-bundes-fuer-steuern-und-zaelle/>, (최종검색일자: 2023. 4. 13.)

(2) 조직과 구성

독일 조세법원(Finanzgericht)와 연방조세법원(BFH)의 조직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³⁶⁾ 조세소송의 1심법원인 조세법원은 각 주에서 설치한 지방법원으로 현재 18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재판관은 약 600명에 달한다.

조세법원은 3명의 전문법관(der Berufsrichter)과 2명의 명예직 법관(der ehrenamtliche Richter, §16 FGO)로 구성된다. 명예직 법관은 관할권 내 거주지(Wohnsitz) 또는 상업시설(gewerbliche Niederlassung) 및 사업장(berufliche Niederlassung)을 가진 25세 이상의 자 중, 조세법원의 선발위원회를 통해 선발하며(§17 FGO) 임기는 5년이고(§22 FGO), 선발절차 등은 조세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명예직 법관은 전문법관과 동일한 권리로 구술심리 및 의결 과정에 참여하나(§17 FGO), 구술 심리 이외의 결정 및 법원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³⁷⁾

(3) 연방조세법원

조세소송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연방조세법원(BFH)은 뮌헨에 설치되어 있다(§2 FGO). 연방 조세법원은 총 11개의 재판부(Senat)로 구성되며 각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전담조세분야가 존재³⁸⁾하며, 이외에 전원합의체부(Großer Senat)도 존재한다.³⁹⁾

연방조세법원에는 약 60명의 연방법관이 근무하며⁴⁰⁾, 이들은 연방하원의 법관선거위원회에서 종신으로 선출하고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⁴¹⁾

36) 독일 연방조세법원(Bundesfinanzhof), <https://www.bundesfinanzhof.de/de/gericht/rechtsprechung/finanzgerichtsbarkeit/>, 검색일자: 2023. 4. 13.

37) 명예직 법관에 대한 규정은 조세법원법 제16조-제30조에서 다루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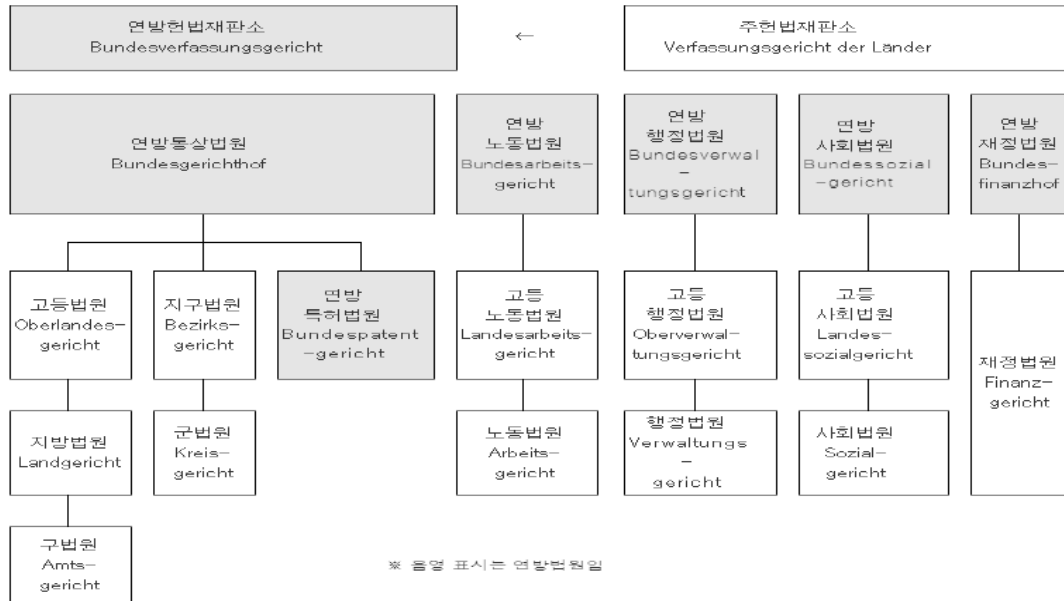
38) 제1재판부는 법인세 · 국제조세 · 이중과세방지조약사건, 제2재판부는 상속세 · 부동산취득세 · 부동산세, 제3재판부는 영업세 · 자녀수당 · 투자보조금, 제4재판부는 개인기업 · 자동차세, 제5재판부는 근로소득세 등을 전담하고 있음

39) 독일 연방조세법원(Bundesfinanzhof), <https://www.bundesfinanzhof.de/de/gericht/organisation/senate/>, 검색일자: 2023. 4. 13.

40) 독일 연방조세법원(Bundesfinanzhof), <https://www.bundesfinanzhof.de/de/gericht/organisation/>, 검색일자: 2023. 4. 13.

41) 독일 연방조세법원(Bundesfinanzhof), <https://www.bundesfinanzhof.de/de/gericht/organisation/gremien/>, 검색일자: 2023. 4. 13.

〈독일 법원의 체계〉



자료: 김성룡·송호영·안성포·이동식, 『독일법』, 2013, p.86

(4) 대리 의무(Vertretungszwang)

연방조세법원(BFH) 절차의 특별한 특징은 이른바 대리 의무에 있다.⁴²⁾ 조세법원법(FGO) 제 62조 제4항에 의하면 연방조세법원의 소송에 있어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관련 당사자를 대리해야 한다.⁴³⁾ 2019년 연방조세법원은 조세법원법 제62조 제4항의 대리 의무가 합헌인지 여부

42) 독일 연방조세법원(Bundesfinanzhof), <https://www.bundesfinanzhof.de/de/verfahrensablauf/vertretungszwang/>, 검색일자: 2023. 4.14.

43) Finanzgerichtsordnung (FGO) § 62

- (4) Vor dem Bundesfinanzhof müssen sich die Beteiligten durch Prozessbevollmächtigte vertreten lassen. Dies gilt auch für Prozesshandlungen, durch die ein Verfahren vor dem Bundesfinanzhof eingeleitet wird. Als Bevollmächtigte sind nur die in Absatz 2 Satz 1 bezeichneten Personen und Gesellschaften zugelassen. Behörden und juristische Personen des öffentlichen Rechts einschließlich der von ihnen zur Erfüllung ihrer öffentlichen Aufgaben gebildeten Zusammenschlüsse können sich durch eigene Beschäftigte mit Befähigung zum Richteramt oder durch Beschäftigte mit Befähigung zum Richteramt anderer Behörden oder juristischer Personen des öffentlichen Rechts einschließlich der von ihnen zur Erfüllung ihrer öffentlichen Aufgaben gebildeten Zusammenschlüsse vertreten lassen. Ein Beteiligter, der nach Maßgabe des Satzes 3 zur Vertretung berechtigt ist, kann sich selbst vertreten.

조세법원법 제62조

에 대하여 이 규정은 합헌이며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를 위한 협약과 유럽 연합의 기본적 권리 헌장과 양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⁴⁴⁾

(5) 대리인(Bevollmächtigte)

변호사(Rechtsanwälte) · 세무사(Steuerberater) · 세무대리인(Steuerbevollmächtigte) · 공인회계사(Wirtschaftsprüfer/Vereidigte Buchprüfer) 및 이러한 사람을 통해 활동하는 세무상담법(Steuerberatersgesetz, StBerG)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의미에 있는 회사(Gesellschaft)만 대리인으로 허용한다.

(6) 소송의 당사자(Verfahrensbeteiligte)⁴⁵⁾

상소심(Revision) 및 상고불허가 항고(Nichtzulassungsbeschwerde, NZB) 절차에 관여한 사람으로써 납세의무자(Steuerpflichtige)는 일반적으로 원고이고 세무당국(Finanzbehörde)은 피고이다. 연방재무부(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는 상소심절차에 참여하여 당사자의 법적지위를 얻을 수 있다(§122 FGO).

(7) 상고(Revision)⁴⁶⁾

조세법원(Finanzgericht)이 상고를 허용한 경우, 관련 당사자는 연방조세법원(BFH)에 직접 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연방조세법원이 조세법원의 법적 해석을 따른다면, 상고는 기각한다. 조세법원의 의견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방조세법원은 결정을 번복하고 직접 사안을 판단한다(과세 변경/취소 등).

(4) 연방조세법원에서 관련 당사자는 대리인을 통해 대리되어야 한다. 이는 연방조세법원에서 절차를 개시하는 절차적 행위에도 적용된다. 제2항 제1문에 명시된 개인 및 회사만이 대리인으로 인정된다. 공법상 관청 및 법인 그리고 그들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Zusammenschlüsse)는 자체 직원 중 판사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다른 공법상 관청 및 법인의 판사 자격이 있는 직원을 통해 대리할 수 있다. 제3문에 따라 대표할 자격이 있는 당사자는 자신을 대표할 수 있다.

44) Beschluss vom 28. November 2019, II B 49/19.

45) 독일 연방조세법원(Bundesfinanzhof), <https://www.bundesfinanzhof.de/de/verfahrensablauf/verfahrensbeteiligte/>, 검색일자: 2023. 4.14.

46) 독일 연방조세법원(Bundesfinanzhof), <https://www.bundesfinanzhof.de/de/verfahrensablauf/rechtsmittel/>, 검색일자: 2023. 4.14.

IV. 조세법원 도입 방안

1. 법원에 관한 「대한민국헌법」 규정

우리 헌법은 법원에 관하여 제5장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 헌법이 이처럼 법원에 대하여 별도의 장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삼권분립의 원칙은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간 견제·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 원리를 말한다.

삼권분립 이론의 핵심은 자유주의적 요청에 따라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지키려는데 그 진가(眞價)가 있다. 적극적으로 국가권력의 능률향상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의 집중과 전횡을 막으려는 것이며, 국가권력과 그것을 행사하는 인간에 대한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인간관에 근거하고 있다. 이 원칙은 기술적인 것이며,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삼권분립주의는 국민주권주의와는 달리, 법치주의의 한 제도로써 다른 조직원리인 군주제나 공화제와도 결합될 수 있다. 또 삼권분립은 자유주의적 요소이므로, 민주주의와 반드시 결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삼권분립의 원칙은 오늘날 전제정부에 대한 입헌정부의 특징으로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헌헌법부터 제3공화국헌법까지는 권력분립에 입각한 헌법이었으나, 어느 기관이 우월하였는지 한 마디로 말할 수 없다. 개괄적으로 제1공화국은 행정부 우위의 형태를 취하였고, 제2공화국은 균형제도를 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제3공화국은 미국식 완전권력분립제라 할 수 없으나 그에 가까운 제도였고, 실질적으로는 행정부 우위의 제도였다고 본다. 그러나 제4공화국은 전통적인 삼권분립이 아니라 국가원수(대통령)에게 권력의 집중·융화현상이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막강한 국가긴급권을 가졌고 그 권한 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없었으므로, 대통령은 국회·법원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서 3권을 조정하였다. 이와 같은 권력집중제에 많은 비판이 가하여졌고 권력분립제로의 복귀가 요청되었으므로, 제5공화국헌법은 권력분산적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나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입법권·사법권과 대등한 입장에서 견제·균형을 취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현행 헌법상으로도 전통적인 대통령제에서 인정되지 않는 권한을 가져, 아직도 대통령이 입법부·사법부에 대하여 우월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법원에 대하여는 그 조직 및 운영 역시 법원(사법부)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 헌법상의 원칙 및 규율에 따라 법원(사법부)은 「법원조직법」을 제정하여 구체화하고 있다.

2. 「법원조직법」의 주요내용

(1) 현행 「법원조직법」의 주요내용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원은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법률에 따라서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법원은 등기·호적·공탁·집행관·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한다.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한다.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지원과 가정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한다.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에 판사를 둔다. 각급 법원의 조직과 관할에 대하여는 각각 개별적인 규정을 둔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한다. 다만, 일정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의견이 일치한 때에만 하여 재판할 수 있으며, 대법원장은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고등법원·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및 시·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하고,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시·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대법원에 법원행

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과 법원도서관을 두고 재판연구관, 법관인사위원회와 법관징계위원회를 두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법관의 신분은 보장된다. 법관은 재직 중 겸직이나 정치운동을 하지 못한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고,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합의심판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한다. 전체 구성은 9편 8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법원조직법」의 체계〉

제 1 편 총 칙	제17조(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제1조(목적)	제18조(위임사항)
제2조(법원의 권한)	제19조(법원행정처)
제3조(법원의 종류)	제20조(사법연수원)
제4조(대법관)	제20조의2(사법정책연구원)
제5조(판사)	제21조(법원공무원교육원)
제6조(직무대리)	제22조(법원도서관)
제7조(심판권의 행사)	제23조(대법원장비서실 등)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제24조(재판연구관)
제9조(사법행정사무)	제25조(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9조의2(판사회의)	제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제 3 편 각급법원
제 2 편 대법원	제 1 장 고등법원
제11조(최고법원)	제26조(고등법원장)
제12조(소재지)	제27조(부)
제13조(대법원장)	제28조(심판권)
제14조(심판권)	제 2 장 특허법원
제15조(대법관의 의사표시)	
제16조(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	

제28조의2(특허법원장)

제28조의3(부)

제28조의4(심판권)

제 3 장 지방법원

제29조(지방법원장)

제30조(부)

제31조(지원)

제31조의2(가정지원의 관할)

제32조(합의부의심판권)

제33조(시·군법원)

제34조(시·군법원의관할)

제35조(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

제36조(등기소)

제 4 장 가정법원

제37조(가정법원장)

제38조(부)

제39조(지원)

제40조(합의부의심판권)

제 5 장 행정법원

제40조의2(행정법원장)

제40조의3(부)

제40조의4(심판권)

제 4 편 법 관

제41조(법관의 임명)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42조(임용자격)

제42조의2 <삭제>

제42조의3(직무권한의 제한)

제42조의4 <삭제>

제43조(결격사유)

제44조(보직)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제45조(임기·연임·정년)

제45조의2(판사의 연임)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

제47조(심신상의 장애로 인한 퇴직)

제48조(징계)

제49조(금지사항)

제50조(파견근무)

제50조의2(법관의 파견 금지 등)

제51조(휴직)

제52조(겸임 등)

제 5 편 법원직원

제53조의2(재판연구원)

제54조(사법보좌관)

제54조의2(기술심리관)

제54조의3(조사관)

제55조(집행관)

제55조의2(법원보안관리대)

제 6 편 재 판

제 1 장 법 정

제56조(개정의 장소)

제57조(재판의 공개)

제58조(법정의 질서유지)

제59조(녹화 등의 금지)

제60조(경찰공무원의 파견 요구)

제61조(감치 등)

제62조(법정의 용어)

제62조의2(외국어 변론 및 전담재판부의 설치)

제63조(준용규정)

제64조(법원경위)

제 2 장 합 의

제65조(합의의비공개)

제66조(합의의방법)	제76조의7(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제 7 편 대법원의기관	제76조의8(준용규정)
	제76조의9(위임사항)
제 1 장 법원행정처	제 4 장 법원공무원교육원
제67조(법원행정처장 등)	제77조(조직)
제68조(임명)	제78조(원장 등)
제69조(국회출석권 등)	제79조(준용규정)
제70조(행정소송의 피고)	제80조(위임사항)
제71조(조직)	
제71조의2(윤리감사관)	제 4 장 법원도서관
제 2 장 사법연수원	제81조(조직)
제72조(사법연수생)	제 8 편 양형위원회
제72조의2(사법연수생 수습의 목적)	제81조의2(양형위원회의 설치)
제73조(조직)	제81조의3(위원회의 구성)
제74조(사법연수원장 등)	제81조의4(위원장의 직무)
제74조의2(교수의 지위 등)	제81조의5(위원회의 회의)
제74조의3(초빙교수)	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제74조의4(교수요원의 파견)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제74조의5(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제81조의8(관계 기관의 협조 등)
제75조(사무국)	제81조의9(사무기구)
제76조(위임사항)	제81조의10(보고서 발간)
제 3 장 사법정책연구원	제81조의11(비밀준수 의무 등)
제76조의2(조직)	제81조의12(위임규정)
제76조의3(사법정책연구원장 등)	제 9 편 법원의경비
제76조의4(비법관 연구위원등 지위 등)	
제76조의5(초빙연구위원)	제82조(법원의경비)
제76조의6(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2) 현행 「법원조직법」상 법원의 종류

현행 법원조직법은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

었다. 이와 같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종류를 「법원조직법」 제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 <개정 2016. 12. 27.>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7. 회생법원

②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支院)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원조직법」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원조직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의 7가지 종류로 이루어져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원조직법」은 제3편에서 법원의 종류별로 각각 별도로 규모, 심판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전문법원 도입 사례 검토

우리 헌법은 특별법원으로 최고사법법원인 대법원의 하급심으로서의 군사법원을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별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과 체계적 연락이 없이 특수한 신분을 가진 자나 특별한 성질은 지닌 사건에 관하여 재판하는 특별한 법원을 의미한다. 우리 헌법은 제110조 규정에 따라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특별한 목적을 위한 법원을 설치할 수는 없다. 다만 대법원의 하급심으로서 전문성을 강조하여 전문분야를 전담하는 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1) 특허법원

종전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둘러싼 분쟁에 관하여 특허청에서 2단계 행정심판을 거친 후 여기에 불복이 있는 경우 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도록 하다가 사법제도 개혁 일환으로 1998. 3. 1. 고등법원급으로 창설된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1심으로 관장하고 그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소송은 2심제로 운영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6. 1. 1.부터 특허권 등 침해사건의 항소심 사건을 관할하게 되었고, 특허권 등 침해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서울중앙,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을, 특허법원에서 2심을 관장하고,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 3심제로 운영. 특허법원에는 자연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한 기술심리관을 전문 기술분야별로 배치하여 특허, 실용신안사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재판부의 이해와 판단을 보조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2) 행정법원

행정법원은 1998. 3. 1. 서울에 처음 설치되었다.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이를 관할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조세, 토지수용, 근로, 일반행정 등 사건을 심판함. 과거에는 행정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행정법원 설립에 따라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회생법원

2017. 3. 1. 우리나라 최초의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고 구조조정과 개인채무 조정절차에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도산사건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경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사건에 대한 관할권(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을 가짐. 회생법원은 법인회생·법인파산·일반회생·개인회생·개인파산·국제도산 사건과 그 관련사건을 관장한다.

V. 향후 과제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나아가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 데 의의가 있다.⁴⁷⁾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불복제도 운영상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법원으로서 조세법원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세법률 관계와 관련된 법적인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 하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반드시 조세 전문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⁴⁸⁾ 특히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즉 납세의무자의 제대로 된 조세상의 권리구제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법관의 올바른 판단이 필수적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조세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조세법원(Tax Court), 연방지방법원(District Court), 연방청구법원(Court of Claims)의 3가지 종류가 있다. 미국의 조세소송은 3가지의 법원 중 선택할 권한을 납세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며, 즉 납세자가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⁴⁹⁾ 이와 같이 권리구제의 강화를 위하여 조세사건과 관련하여 조세 전문판사가 심리하는 독자적인 법원조직으로서의 조세법원의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행정상 불복제도는 사전적 구제제도와 사후적 구제제도로 이원화 하되, 사전적 구제제도는 직접 처분을 할 처분청(국세청)이 담당하고 사후적 구제제도는 전문법원을 통해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전문법원 설치 사례에서와 같이 전문법원의 설치는 관련 사건의 유형이 매우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특성이 있어서 관련 분야의 오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의 지식이 사안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므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전문법원의 설치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⁵⁰⁾

우리 헌법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특별법원의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전문분야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관련 전문

47) 백혜영·강선아, 앞의 글, 128면.

48) 황진영, 앞의 책, 2010, 45면. 황진영은 재정·조세전문법원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49) 길용원, 앞의 글, 29면 및 각주 48.

50) 황진영, 재정조세 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입법적 검토,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2009. 7면.

분야의 권리구제의 범위를 넓히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전문법원으로 조세법원을 설치한다면, 현행 「법원조직법」 제3조의 개정을 통해서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사법부의 조직·구성을 변경하는 방안이므로 조세법원의 설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세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서는 조세법원의 설립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토 론 문

조세법원의 설립 필요성과 향후 과제

| 박정흠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저자는 우리나라 조세불복제도를 개괄하고 학계와 언론 등에서 논의 중인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조세법원 도입 관련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원고를 작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조세법원 관련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조세법원을 도입할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제도를 풍부하게 논의하였고 특수 법원 설립 관련 법제도를 살핍으로써 법적인 도입 가능성 또한 살피봄으로써 조세법원 도입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법원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중 조세법원 도입의 필요성 및 향후 과제의 제시가 앞선 문제점 분석과 보다 긴밀하게 연결되면 저자의 논지가 선명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관련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자가 제V장에서 조세법원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법적 분쟁의 증가와 헌법이 보장한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함으로 이해됩니다. 이중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행사의 어려움과 관련한 문제는 앞선 제II장의 현행 제도 문제점 분석에서 논의된 바가 없어 제언 배경을 이해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저자의 논지를 예측해보면 현행 제도에서는 최종적으로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 절차가 복잡하고 길어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앞서 단계별 조세불복제도 운영의 실효성 및 처리기

한 현실화 문제 등과 연관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술을 보강한다면 논지가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 경우 과세처분을 조그소송 이전에 행정심판 단계에서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세법원 도입 필요성의 근거 중 법적 분쟁의 증가 문제는 앞선 제I장과 제II장에서 조세불복 청구건수 증가 등과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있습니다. 다만 불복건수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조세법원 도입의 필요성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세심판원의 규모를 키우는 등의 방안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전문적 조세법원 도입을 통하여 처리기한이 짧아질 수 있다면 불복건수 증가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으로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세법원 도입을 통한 효과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국내외 사례 및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관련 논의를 풍부하게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세법원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조세법원 도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려해야할 지점들을 명확화하고 현시점에서 분석하는데 있어서 존재하는 한계점을 제시하는 방향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가 제시한 현행제도의 문제점 중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제도의 중복성 문제와 심판원의 재심 문제 등 두 쟁점은 현재 서술 상 조세법원 설립 필요성 논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두 쟁점 또한 조세법원 논의와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관련 논의를 추가하여 원고의 완결성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해외사례 논의 또한 우리나라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조세법원 도입의 필요성 논의와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보다 명시적으로 제시한다면 원고의 완결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조세법원의 경우 기관 고유의 소송 절차 규칙을 도입함으로써 사건 해결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원격 소송을 진행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기울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제도개선 및 조세법원 도입 논의 시에 참고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회계사, 세무사 등 조세 관련 전문직 종사자가 조세법원시험을 통과하여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조세소송 대리인 자격에 관한 논의 또한 조세심판 도입 관련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으로, 관련 논의를 다루는 것 또한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 론 문

조세법원의 설립 필요성과 향후 과제

| 홍병진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

-
- 본 연구는 국내외 조세불복제도의 현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으로 조세법원 설립을 주장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조세불복제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다룬 것이 장점
 - 조세심판원,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소개 및 특징을 자세하게 정리함
 - 이를 바탕으로 현행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한 것이 특징
 - 조세불복제도 운영의 실효성,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역할 및 지위, 처리기한의 현실화 문제, 심판원의 재심 문제를 현행 조세불복제도의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이라 주장함
 - 주요 국가의 조세법원 및 조세소송의 현황을 자세하게 다루어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비교가 가능하게 한 특징이 있음
 -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의 예시를 소개하였으며, 주로 조세법원 및 조세소송의 이루어지는 법원의 조직상의 위상에 대하여 다루고 있음
 -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법원 도입 방안에서 논의함
 - 「법원조직법」제3조의 개정을 통한 전문법원의 형식으로 조세법원 설치를 제안함

- 장기적으로 행정상 불복제도는 사전적 구제제도와 사후적 구제제도로 이원화하고, 사전적 구제제도는 국세청이 담당하고 사후적 구제제도는 전문법원을 통해 담당하는 구조를 제안함

□ 조세법원의 설립에 대한 주제는 우리나라의 공정하고 신속한 조세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주제이므로 대중 및 연구자의 많은 관심이 필요함

- 조세 분쟁이 최근 폭발적인 증가세에 있고 향후 디지털세 등으로 인하여 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세법원의 설립과 관련된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됨
- 금융기술 성장, 디지털화, 산업의 통합 등으로 인하여 조세제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조세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세법원 설립에 대한 논의는 중요함
-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내외 조세불복절차에 대한 소개, 우리나라의 조세불복절차가 가지는 구조적 문제점, 법원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위상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의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 본 연구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고려해볼 수 있음

- 현행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 중에 하나인 단계별 조세불복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논의를 고려해볼 수 있음
 - 감사원의 인용률은 다른 절차에 비해 낮은 이유가 감사원을 통한 조세불복이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일 수 있으며, 단순히 인용률의 차이로 실효성에 낮다고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또한 처리율의 경우에도 국세심사와 조세심판에 비하여 감사원에 제출된 조세불복이 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진 경우라면 평균적으로 처리율이 낮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 이후에 실효성에 대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가 비록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각기 다른 기관에서 중복 수행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각 기관 별 특성으로 인하여 다소 다른 심판이 나올 수 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관별 인용률의 차이에서 가늠이 가능함
 - 이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유사 사건이 동일한 방향으로 심

판이 되는지 비교한 후에 이야기할 수 있음

- 또한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정으로 인해 납세의무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도 Choice of Forum의 자유를 두어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음
- 마지막으로 조세법원이 설립된다고 하여 인용률과 처리율이 높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함

○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인 사전적 제도로서의 과세전적부심사 운영과 심사의 중복성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해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지적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에 대한 사항이 과연 조세법원이 설치된 경우에 현 제도의 구조 보다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인 처리기한의 현실화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해볼 수 있음

- 처리기한의 문제는 조세법원의 설립 여부의 문제보다 담당 기관의 규모와 관련된 부분이 보다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됨
- 또한 다른 국가 및 국내의 다른 분야 법원 및 청구의 처리기간 및 인원 등을 잘 살펴보고 이와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보다 주장의 강건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국내의 다른 분야의 법원 등과 비교하여 조세 분쟁의 해결이 늦어지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해야 우선순위가 시급하다는 것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향후 과제와 관련하여 조세 전문법원 도입을 주장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과제를 제시해주면 보다 완성도 높은 연구가 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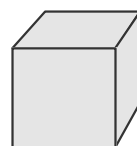
- 전문법원 도입 사례를 보다 자세하게 파악하고 해당 법원이 도입되었던 배경과 이로 인하여 어떠한 효과(인용률, 처리율, 규모 등)가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향성과 과제를 구체화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추가적으로 조세법원의 도입을 반대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고 이를 반박하는 부분을 다루면 보다 강건한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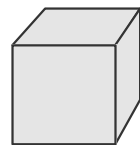
□ 기타 사항

- 우리나라나 해외의 제도를 소개할 때 통일화된 포맷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함
 - 예를 들어, 주요 국가의 조세법원·조세소송 관련 현황과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개괄, 조세법원으로 나뉘어 있으나, 캐나다의 경우 도입 배경, 조세법원의 성격, 당사자, 재판의 공개, 절차로 나누어져 있음
 - 조세법원 필요성과 관련된 부분을 연계시킬 수 있는 항목을 공통적으로 적용시켜 국가별로 분석하면 보다 독자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조세법원 설립과 관련하여 현재 어떤 논의가 진행되었고 반대 의견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도 많은 독자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할 것을 제안함
 - 또한 반대 의견에서 주로 제시하는 근거에 대하여 적절한 디펜스가 있으면 좋을 것으로 보임
- 향후 과제와 앞 내용 사이의 연계
 - 앞에 다양한 제도 소개 및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해당 부분이 왜 조세법원이 설립되어 운영되어야 하는지, 왜 특정 형식으로 도입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결성을 제고하면 보다 강건한 연구가 될 것으로 보임
- 단계별 조세불복제도 운영의 실효성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1차적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만 논의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단계별’ 표현을 제외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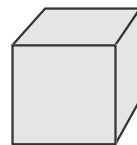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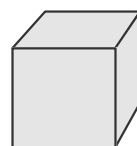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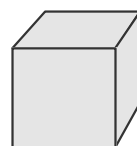
MEMO



MEMO



MEMO



제31회 한국세무포럼 <비매품>

인 쇄 일 2023년 4월 26일

발 행 일 2023년 4월 27일

발 행 인 원 경 희

발 행 처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팀
06660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5(서초3동 1497-16)
전화 (대표) 521-9544

